

《研究基礎資料：翻譯》91-01

蘇聯의 憲法

1991. 3.

韓國法制研究院

蘇聯의 憲法

(1988年 12月 1日 全文改正)

(1990年 3月 14日 部分改正)

前 文

레닌을 先鋒으로 한 共產黨의 지도하에서 러시아의 勞動者와 農民이 이룩한 10月의 社會主義革命은 資本家와 地主의 權力を 타도하고 억압의 쇠사슬을 끊어 새로운 형태의 프롤레타리아獨裁를 확립하였고 革命의 產物(획득물)을 수호하고, 社會主義와 共產主義를 건설하는 기본적 道具인 소비에트國家를 수립하였다. 資本主義로부터 社會主義로 향한 인류의 전세계사적 전환이 시작되었다.

內戰에서 승리하여 帝國主義의 干涉을 물리친 소비에트權力은 철저한 社會的・經濟的 變革을 실현하여 人間에 의한 人間의 착취, 계급적 대립과 民族的 적대의식을 영원히 청산하였다. 聯邦構成共和國의 蘇聯으로의 統合은 社會主義를 건설함에 있어서 國內의 여러 民族의 역량과 잠재력을 提高시켰다. 生產手段의 社會的 所有와 근로대중을 위한 진정한 民主主義가 확립되었고 인류사상 최초로 社會主義社會가 창설되었다.

조국의 大戰爭에서 역사적 승리를 거둔 소비에트人民과 그 軍隊에 의한 불멸의 공적은 社會主義의 빛나는 역량으로 나타났다. 이 승리는 蘇聯의 권위와 국제적 지위를 강화시켰고 전세계에서의 社會主義, 民族解放, 民主主義와 平和努力의伸張을 위한 새롭고 바람직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蘇聯의 勤勞者는 그 창조적 활동을 계속하면서 國家의 급속하고 전반적인 발전과 社會主義體制의 충실을 보장하였다. 勞動者階級, 콜호즈農民, 人民知識人의 同盟 및 蘇聯에 대한大小民族의 우호가 강화되었다. 勞動者계급을 주도적인 세력으로 하는 소비에트社會의 社會・政治・思想的 統一이 형성되었다.

소비에트 國家는 프롤레타리아獨裁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全人民의 國家가 되었다. 蘇聯에서는 발전된 社會主義가 건설되었다. 社會主義가 독자적인 기반에서 발전하고 있는 현단계에 있어서는 新體制의 창조력 및 社會主義的 生活樣式의 優秀

性은 더욱 더 완전하게 발휘되었고 勞動者는 위대한 革命적 산물의 성과를 더욱 광범위하게 향유하고 있다.

발달된 社會主義社會는 강력한 生産力, 선진적인 과학과 文化가 창조된 社會이며 人民의 복지가 부단하게 향상되고 개성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더욱 바람직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社會이다. 이것은 모든 階級과 社會 각층의 접근, 모든 大小 民族의 法的·實質的 平等과 그 형제적 협력을 기초로 하여 소비에트人民이라는 人間의 새로운 역사적 공동체가 형성되고 社會主義的 社會關係가 성숙한 社會이다.

이러한 社會는 애국자이며, 국제주의자인 勤勞者가 고도의 組織性, 思想性과 意識性을 지닌 社會이며 萬人이 個個人의 복지를 생각하고 個個人이 萬人の 복지를 생각하는 것이 생활의 규범이 된 社會이다. 이러한 社會는 참다운 민주주의의 社會이며 그 정치제도는 모든 社會的 事業의 효과적 관리, 國家生活에 대한 勤勞者の 좀더 적극적인 참여 및 市民의 현실적인 권리와 자유를 社會的 책임과 의무에 결합시키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

발전된 社會主義社會는 共產主義로 향하는 합법적인 단계이다. 소비에트 國家의 最高目標는 社會의 共產主義的 價值가 발전하는, 계급없는 共產主義社會의 건설이다. 社會主義的 全人民 國家의 주요한 사명은 共產主義의 물질적·기술적 기반의 창설, 社會主義的 社會關係의 완성과 이러한 관계의 共產主義的 사회관계로의 전환, 共產主義社會에 대한 人間의 육성, 근로자의 物質的·文化的 生活水準의 향상, 國家의 안전보장, 평화의 강화와 국제협력에 대한 발전의 촉진이다.

소비에트 人民은

과학적 共產主義思想의 지도이념에 따라 자기의 革命적 전통에 대한 충성을 지키고, 社會主義의 위대한 社會·經濟·政治的 산물에 의하여 社會主義的 민주주의에 대한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고,

社會主義世界體制의 한 구성부분으로서의 蘇聯의 國제적 입장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國際主義的 責任을 자각하며,

1918年の 최초 소비에트憲法, 1924年の 蘇聯邦憲法 및 1936年の 蘇聯邦憲法의 思想과 여러 原則을 계승하여 蘇聯의 사회체제와 政治의 기초를 明文化하고 市民의 권리, 자유 및 의무, 社會主義的 全人民 國家에 대한 組織의 여러 원칙과 목표를 정하여 이 憲法에 선언한다.

第1編 蘇聯의 社會制度와 政治의 基礎

第1章 政治制度

第1條 소비에트社會主義聯邦 共和國(以下 蘇聯)은 勞動者, 農民, 인텔리겐치아 및 國內의 모든 人民과 民族의 意思 및 利益을 代辯하는 全人民의 社會主義社會이다.

第2條 蘇聯의 모든 權力은 人民에게 있다. 人民은 蘇聯의 政治的 基礎를 이루는 人民代議員 大會를 통하여 國家權力を 행사한다. 모든 國家機關은 人民代議員 大會의 監督下에 있고 이에 보고할 義務를 진다.

第3條 蘇聯은 民主主義的 中央集權制의 原則, 즉 上·下 모든 國家權力機關의 選舉制, 이들 모든 機關이 人民에 보고하여야 할 義務, 上級機關의 決定에 대한 上級機關의 履行義務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한다. 民主主義的 中央集權制는 中央의 指導力を 地方의 創意 및 創造的 活動과 부여된 任務에 대한 각 國家機關 및 公務員의 責任과 結合시킨다.

第4條 蘇聯과 그의 모든 機關은 社會主義的 適法性에 입각하여 活動하고 法과 秩序를 유지하며 社會의 利益 및 市民의 權利와 自由를 보장한다. 國家機關, 公共團體 및 公務員은 蘇聯憲法과 蘇聯 法律을 준수할 義務를 진다.

第5條 國家의 重要한 問題는 全人民의 討議에 제출되며 人民投票(國民投票)에 불인다.

第6條 蘇聯邦共產黨, 다른 여러 政黨, 勞動集團, 青年組織 기타 社會組織 및 大衆運動組織은 代議員으로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나 다른 形태에 의하여 소비에트 國家의 정책결정과 國家 및 社會의 事業운영에 참여한다.

第7條 모든 政黨, 社會組織, 大衆運動組織은 그 綱領 및 規約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蘇聯의 憲法과 法律의 범위내에서 활동한다. 폭력에 의하여 소비에트의 立憲體制와 社會主義 國家의 통일성 및 그 안전을 전복 또는 파괴하고 社會的·民族的·宗教的 反目을 선동할 목적을 가진 政黨, 組織, 運動集團의 창설 및 활동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第8條 勞動集團은 國家의 및 社會의 事業의 討議와 決定, 生產과 社會發展의 計劃, 要員의 養成과 配置, 企業 및 機關의 管理問題, 勞動 및 生活條件의 改善問題, 生

產性 向上과 社會·文化的 目的 및 物質的 인센티브에 할당된 資金의 利用問題에 대한 討議와 決定에 參加한다.

勞動集團은 社會主義的 競爭, 先進的 作業方法의 擴散, 勞動規律의 強化를 도모하고 勞動者들을 共產主義 道德精神으로 教養시키며 그들의 政治的 自覺, 文化的 水準, 職業的 技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第9條 蘇聯社會의 政治制度發展을 위한 기본적 방향은 社會主義의 民主主義의 展開, 즉 社會와 國家의 諸事業管理에 대한 労動者들의 더욱 광범위한 參여, 國家機構의 改善 및 社會團體 活動의 向上, 人民 監督體制의 強化, 國家生活 및 社會生活의 法的 基礎의 鞏固化, 開放의 擴大와 輿論의 지속적反映 等에 있다.

第2章 經濟制度

第10條 蘇聯의 經濟제도는 蘇聯市民의 소유와 집단, 國家의 所有에 의하여 발전한다. 國家는 다양한 소유형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정비하고 이에 대한 동등한 보호를 보장한다. 토지와 지하자원, 수자원 및 자연에 존재하는 동식물은 그 地域人民의 고유한 재산이며 人民代議員大會의 관리하에 있고 市民, 企業, 시설 및 각종 組織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된다.

第11條 市民所有는 그 市民 個人的 재산이며 물질적·정신적 만족을 위하여 사용된다. 市民所有에는 노동에 의하여 또는 法律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취득된 消費用 또는 產業用의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다만, 市民의 所有로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취득물은 이로부터 제외된다. 市民은 농업과 개인의 副業經營 및 法律에 규정된 기타 목적을 위하여 永代使用·相續의 대상으로서 土地를 所有하거나 使用할 권리가 있다. 市民財產의 相續權은 法律에 의하여 인정되고 보장된다.

第12條 集團所有에 속하는 것은 貸貸制의 企業, 勞動集團企業, 協同組合, 株式會社 기타 經營組織에 의한 소유이다. 集團所有는 法律의 규정에 의하여 國家所有를 다른 형태로 전환시키거나 자유의사에 의하여 市民 또는 組織의 재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第13條 勤勞所得은 蘇聯市民의 個人的 所有의 基礎를 이룬다. 蘇聯市民의 個人的 所有는 日用 生活品, 個人消費品과 편의시설, 小規模自作農地의 道具와 附帶物品, 住宅과 賽蓄을 포함한다. 市民의 個人所有權과 個人財產의 相續權은 國家가 보호

한다.

市民은 附隨的인 小規模自作農地(家畜과 家禽을 포함), 果樹園 經營, 野菜栽培 또는 個人住宅建設을 위하여 法에 規定된 節次에 입각하여 提供된 土地를 이용할 수 있다. 市民들은 자신에게 分配된 土地를合理的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國家와 集團農場을 小自作農地를 運營하는데 助力한다. 法의로 市民의 所有로 되어 있거나 이용하고 있는 財產은 不勞所得을 획득하거나 社會에 손해를 미치는 方法으로 사용할 수 없다.

第14條 蘇聯人民의 摧取 없는 勞動은 社會의 富와 모든 蘇聯人民의 福祉增進의 源泉이다. 國家는 「각자는 能力에 따라 勞動하고 勞動에 따라 報酬를 받는다」는 社會主義 原則에 입각하여 勞動과 消費量에 대한 統制를 실시한다. 國家는 所得에 대한 所得稅率을 決定한다. 國家는 物質的, 精神的 刺戟을 調和시키고 革新과 일에 대한 創造的 態度를 장려함으로써 勞動이 모든 蘇聯市民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전환되도록 助力한다.

第15條 社會主義下에서 社會生產의 最高目標는 人民의 增大되는 物質的・精神的 요구를 더욱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國家는 勞動者들의 創造的 積極性, 社會主義의 競爭 및 科學・技術의 進步에 입각하여 經濟指導의 形태와 方법을 개선함으로써 勞動의 生產性擴大, 生產效率과 勞動의 質적 향상 및 人民經濟의 飛躍的・計劃的・均衡的 발전을 보장한다.

第16條 蘇聯의 經濟는 蘇聯領土內에서의 社會의 生產, 分配 및 交換의 모든 要所를 포함하는 통합된 國民經濟複合體이다.

經濟指導는 經濟的, 社會的 發展을 위한 國家計劃에 基礎하여 部分別・地域別 諸原則을 고려하며, 中央集權的인 指導를 企業, 企業合同 및 기타 組織에 대한 經濟的 自主性과 個人的 創意性과 결합하여 행한다.

第17條 蘇聯에서는 法律에 의하여 家內手工業, 農業, 住民에 대한 生活서비스 분야에서의 個人勞動活動과 人民 및 그 家族의 個人勞動에 基礎한 기타 種類의 活動만이 허용된다. 國家는 個人的 勞動活動을 調整함으로써 그 活動이 社會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第18條 蘇聯은 現在 및 未來의 世代를 위하여 土地, 地下資源, 植物・動物의 보호 및 科學에 근거한 合理的 利用, 大氣와 물의 汚染防止, 天然資源의 再生産保障, 人間周邊環境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취한다.

第3章 社會發展과 文化

第19條 蘇聯의 社會的 基礎는 勞動者, 農民, 知識人의 確固不動한 同盟이다. 國家는 社會의 社會的 同質性이 強化되도록 階級의 差異, 都市와 農村間, 精神勞動과 肉體勞動間의 本質的 差異를 解消하며 蘇聯의 모든 共和國과 民族의 全面的인 발전과 결합에 助力한다.

第20條 「各自의 自由로운 發展은 萬人の 自由로운 發展의 條件이다.」라고 하는 共產主義의 理想에 따라, 國家는 人民들로 하여금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創造力, 能力 및 재능을 발휘하게 하고 個性의 全面的인 발전을 위한 實質的인 機會를 확대하는 것을 그 目標로 한다.

第21條 國家는 勞動條件의 개선, 安全과 勞動의 보장, 勞動의 科學的 管理에 관여하고 모든 經濟部門에서 生產課程의 綜合的인 機械化와 自動化를 통해 肉體的 勞動을 감소시키고, 將來 이를 완전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第22條 蘇聯에서는 農業勞動을 多樣한 工業勞動으로 轉換하고 農村地方에 國民教育, 文化, 保健, 商業, 公共給食, 서비스 및 公共 편의시설망을 擴大하며, 村落이나 部落을 개선하여 충분하게 整備된 居住地로 개선하는 計劃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第23條 國家는 生產性向上을 통하여 勞動者의 賃金 및 實質所得 水準을 향상시킬 政策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蘇聯人民의 요구를 더욱 완전하게 충족시킬 목적으로 社會消費基金이 設置된다. 國家는 社會團體 및 勞動者集團의 廣範圍한 參與下에 당해 基金의 擴大와 公正한 配分을 시행한다.

第24條 蘇聯에는 保健, 社會保障, 商業, 公共給食, 公共서비스 및 公益施設 등의 國家的인 制度가 運營되며 擴大되고 있다. 國家는 人民들에게 모든 형태의 서비스를 提供하도록 協同組合 및 기타 社會諸組織의 活動을 嘉獎한다. 國家는 大衆的인 體育과 스포츠의 發展을 嘉獎한다.

第25條 蘇聯에는 均等한 大衆教育制度가 있으며 이 制度는 계속 개선되고 있다. 이 制度는 人民에게 一般教育과 職業教育을 시키고 있고, 青年들의 共產主義教育과 知的 및 육체적 발달에 이바지하며 勞動과 社會活動을 위하여 그들을 教育시킨다.

第26條 國家는 社會의 요구에 따라 科學의 計劃的인 發전과 科學要員의 養成을 보장하고, 科學研究結果가 國民經濟 및 기타 生活領域에 導入되도록 嘉獎한다.

第27條 國家는 蘇聯人民의 道德的·美的 教育과 文化水準 향상을 위해 文化的 價

值를 보장·확대하고 廣範圍하게 利用하도록 配慮한다. 蘇聯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職業藝術과 民俗藝術 및 춤미의 창조·발전이 적극적으로 장려된다.

第4章 對外政策

第28條 蘇聯은 항상 레닌의 平和政策을 추구하며 國家安保의 強化 및 廣範圍한 國際的 協力を 위하여 노력한다.

蘇聯의 對外政策의 目標는 蘇聯에서 共產主義建設을 위한 유리한 國際的條件을 확보하고 蘇聯의 國家的 利益을 지키고 世界社會主義의 立場을 強化하고 民族解放 및 社會的 發展을 지향하는 人民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侵略戰爭을 防止하고 全般的이고 완전한 軍縮을 達成하며 社會體制가 다른 國家간에 平和共存原則을 일관성있게 실현하는데 있다.

蘇聯에서 戰爭의 宣傳은 禁止된다.

第29條 蘇聯과 기타 國家와의 關係는 主權平等, 武力使用 및 武力에 의한 威脅의相互拋棄, 國境不可侵, 國家의 領土保存, 전쟁의 平和的 解決, 人權과 基本的 自由의 尊重, 諸民族의 同等權과 자국의 운명을 자유롭게決定하는 民族의 權利, 國家間의 協力,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의 原則 및 基準과 蘇聯이 체결한 國際條約으로부터 발생하는 義務의 誠實한 履行 等 諸原則의 遵守를 基礎로 한다.

第30條 蘇聯은 國際社會主義體制 및 社會主義 共同體의 構成部分으로서 社會主義의 國際主義의 基礎위에서 社會主義 諸國과의 友好, 協力 및 兄弟的 相互援助를增進·強化시키며 經濟統合과 社會主義의 國際分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第5章 社會主義 祖國의 防衛

第31條 社會主義 祖國의 防衛는 國家의 가장 중요한 機能이며 全人民의 課業이다. 社會主義의 獲得物과 蘇聯人民의 평화적 노동, 國家의 主權 및 領土保存을 옹호할目的으로 蘇聯은 軍隊를 유지하고 一般的인 義務兵役制度를 도입하였다. 蘇聯軍隊의 人民에 대한 義務는 社會主義 祖國을 믿음직하게 防衛하고 어떠한 侵略者의 攻擊에도 지체없이 반격할 수 있는 戰鬪體制를 항상 유지하는 것이다.

第32條 國家는 國家의 安全과 防衛力を 보장하고 蘇聯軍隊에 필요한 모든 것을 供

給한다.

國家의 安全保章과 國防力 強化에 관한 국가기관, 사회단체, 공무원 및 人民의 義務는 法律로 정한다.

第2編 國家와 個人

第6章 蘇聯의 市民權, 市民의 平等權

第33條 蘇聯에는 평등한 市民權이 인정된다. 聯邦構成共和國의 모든 市民은 蘇聯市民이다.

蘇聯 市民權의 취득·상실의 근거와 節次는 蘇聯 國籍法으로 정한다. 蘇聯의 在外市民은 蘇聯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

第34條 蘇聯 市民은 出身成分, 社會的 地位 및 財產程度, 民族, 人種, 性別, 教育, 言語, 宗教에 대한 態度, 職業의 種類와 特性, 居住地 및 其他에 구애됨이 없이 法앞에 平等하다. 蘇聯 市民의 平等權은 經濟的·政治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보장된다.

第35條 蘇聯에서 女性은 男性과 同等한 權利를 가진다.

이 權利의 行사는 教育, 職業訓練, 勞動, 報酬, 升進, 社會的·政治的 및 文化的 生活에 있어서 同等한 權利를 女性에게 부여하고, 女性의 專門勞動과 健康保護에 관한 特別措置, 嫣婦와 子女를 가진 女性에 대한 有給休暇 및 그밖의 特典附與, 母子에 대한 法的 保護와 精神的·物質的 支援, 年少한 子女를 가진 女性의 勞動時間의 점진적인 短縮에 의하여 보장된다.

第36條 相異한 民族과 人種의 蘇聯 市民은 平等한 權利를 가진다.

이 權利의 行사는 蘇聯의 모든 共和國과 民族들의 전반적 발전과 同和政策에 의하여 소비에트愛國主義와 社會主義的 國際主義의 精神에 立脚한 市民教育에 의하여, 母國語와 蘇聯內의 他民族 言語를 사용할 수 있는 機會에 의하여 보장된다.

人種 및 民族的 特徵에 따라 市民의 權利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한하거나 반대로 特權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여하거나 人種的·民族的 排他主義, 증

오 또는 경멸의 宣傳은 法律에 의하여 處罰된다.

第37條 蘇聯에 있는 外國人과 無國籍者는 法律에 의하여 人格權, 財產權, 家族權 기타의 權利를 보장하기 위하여 裁判所와 기타 國家機關에 訴訟을 제기할 權利를 비롯하여 法律이 정하는 諸權利와 自由가 보장된다.

蘇聯 領土內에 거주하고 있는 外國市民과 無國籍者는 蘇聯 憲法을 尊重하고 소비에트法律을 遵守할 義務를 진다.

第38條 蘇聯은 勞動者의 利益과 平和運動의 옹호, 革命運動 및 民族解放運動에의 參加, 社會的·政治的·科學的인 進步的 活動 및 기타의 創造的인 活動을 이유로 迫害당하는 外國人에게 庇護를 부여한다.

第7章 蘇聯市民의 基本權, 自由 및 義務

第39條 蘇聯 市民은 蘇聯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宣言되고 보장된 社會的·經濟的·政治的·個人的 權利와 自由를 가진다.

社會主義制度는 社會的, 經濟的 및 文化的 發展綱領을 수행하여 市民의 權利와 自由의 擴大 및 生活條件의 꾸준한 向上을 보장한다. 市民은 權利 및 自由를 행사하는 경우 社會와 國家의 利益 및 다른 市民의 權利를 침해할 수 없다.

第40條 蘇聯 市民은 社會的 要求를 고려하여 適性, 能力, 職業訓練 및 教育에 따라 職業, 業務 및 勞動의 種類를 선택할 權利를 包含한 勞動權, 즉 勞動의 質과 量에 따라(國家가 정한 最低線 以上으로) 雇傭保障과 賃金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이 權利는 社會主義 經濟制度, 生產力의 지속적인 成長, 無償의 職業教育, 技術向上 및 새로운 專門技術知識의 教育과 職場配置 및 職業斡旋制의 발전에 의하여 保障된다.

第41條 蘇聯 市民은 休息의 權利를 가진다.

이 權利는 勞動者 및 事務員을 위한 週41時間 이내의 勞動, 多양한 營業活動과 產業에 있어서 勞動時間의 短縮, 夜間勞動時間의 短縮, 每年 有給休暇와 每週 休日의 허용, 文化·教育 및 健康增進 施設의 擴大, 大眾스포츠, 體育, 觀光旅行의 발달, 居住地 附近의 娛樂施設과 기타 餘暇善用의 機會를 제공함으로써 보장된다. 콜호즈員의 勞動時間 및 休息日數는 콜호즈의 定款에 의하여 보장된다.

第42條 蘇聯 市民은 健康保護의 權利를 가진다.

이러한 權利는 國家保健機關이 提供하는 無償醫療施惠, 市民의 治療와 健康增進을 위한 諸施設體系의 擴大, 安全技術과 產業衛生의 發展과 改善, 廣範圍한 防疫措置의 實施, 環境改善措置, 兒童勞動의 禁止와 學校 教科課程 및 勞動教育의 一部로서 兒童勞動의 금지를 포함한 자라나는 世代의 健康에 대한 特別配慮, 發病豫防 및 發病率低下, 市民의 壽命延長과 活氣있는 生活을 위한 研究開發을 발전시킴으로써 보장된다.

第43條 蘇聯 市民은 老齡, 疾病, 勞動能力의 全部 또는 一部 衰失, 또는 扶養者의 死亡等의 경우, 物質的으로 보호받을 權利를 가진다.

이 權利는 勞動者, 事務員 및 集團農場員의 社會保險, 一時的인 勞動不能時 補助金에 의하여 보장되고 國家와 集團農場의 隱退規定에 따른 老齡年金, 身體障礙年金, 扶養者 衰失時의 年金의 紿與, 部分的 勞動能力喪失者에 대한 就業斡旋, 無依托 高齡者와 身體障礙者에 대한 배려와 기타 社會保障形態 等으로 보장된다.

第44條 蘇聯 市民은 住宅을 提供받을 權利를 가진다.

이 權利는 國家 및 社會所有 住宅의 개량과 유지, 協同組合 및 個人의 住宅施設에 대한 協助, 住宅建設計劃 實施에 따라 提供되는 住宅을 社會的 監督下에公正하게 배분하고, 住宅을廉價로 提供함으로써 보장된다. 蘇聯 市民은 자신에게 提供된 住宅을 효과적으로 管理하여야 한다.

第45條 蘇聯 市民은 教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이 權利는 各種 無料教育, 青年에 대한 普遍的 中等義務教育, 實用的인 活動과 生產을 指向하는 職業技術教育, 中等專門教育 및 高等教育의 广泛 위한 발전, 通信教育 및 夜間教育의 발전, 學生들에게 國家獎學金 및 기타 特典의 提供, 教科書의 無償支給, 母國語로 教育하는 學校에 入學할 機會, 獨學을 위한 편의제공에 의하여 보장된다.

第46條 蘇聯 市民은 文化的 혜택을 賦유할 權利를 가진다.

이 權利는 國家와 社會所藏品인 蘇聯 및 世界文化財에 대한 一般的 公開, 國內에서의 文化教育施設의 擴大와 均等한 配置, 텔레비전과 라디오放送, 圖書, 新聞 및 定期刊行物의 出版, 無料圖書館의 擴大 및 諸外國과의 文化交流를 擴大함으로써 보장된다.

第47條 蘇聯 市民은 共產主義建設 目的에 입각하여 科學的, 技術的, 藝術的 活動의 自由가 보장된다. 이 自由는 科學研究의 擴大, 發明과 技術革新의鼓舞, 文學 및

藝術의 발전에 의하여 보장된다. 國家는 이에 필요한 물질적 여건을 제공하고, 自發的 團體와 作家同盟을 지원하며, 國家經濟 및 기타 활동분야에 발명과 技術革新을 도입하도록 노력한다. 作家, 發明家, 技術革新家의 權利는 國家에 의하여 보호된다.

第48條 蘇聯市民은 國家 및 社會事業의 運營, 全聯邦 및 地方的 중요성을 지닌 法律과 法規에 대한 審議와 採擇에 參加할 權利를 가진다. 이 權利는 人民代議員 大會와 기타 國家機關에 대한 選舉權 및 被選舉權의 機會, 全國의인 討議와 人民投票, 人民監督, 國家機關·社會團體·地域共同體의 事業場所와 居居住地의 會議에 參加할 機會에 의하여 보장받는다.

第49條 蘇聯의 모든 市民은 國家機關 및 社會團體에 자신의 活動의 개선에 관한 제안을 하고 그들 事業의 缺陷을 비판할 權利를 가진다. 公務員은 法律에 의하여 정하여진 期間內에 市民이 提案과 請願을 審議하고 그에 대하여 回答을 보내며 적절한 대책을 講究할 義務를 진다. 批判을 이유로 한 迫害는 禁止된다. 批判에 대하여 迫害하는 者는 責任을 追窮당한다.

第50條 市民의 利益에 입각하여 社會主義體制를 強化하고 발전시킬 目的으로, 蘇聯市民에게는 言論, 出版, 集會, 大衆集會, 街頭行進 및 示威의 自由가 보장된다. 이러한 政治的 自由의 現實은 公共建物, 거리 및 廣場을 勞動者와 그들 團體에게 提供, 情報의 광범위한 보급과 出版物, 텔레비전 및 라디오를 이용할 수 있는 機會에 의하여 보장된다.

第51條 蘇聯市民은 政黨과 社會組織을 결성하는 권리 및 정치적 적극성과 자주성의 발전, 市民의 다양한 관심의 충족을 지원하는 대중운동에 參加하는 권리를 가진다. 社會組織에는 그 規約에 의한 임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條件이 보장된다.

第52條 蘇聯市民은 良心의 自由 즉 宗教를 믿거나 믿지 아니할 權利, 그리고 宗教的儀式 또는 無神論的宣傳을 행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宗教上의 信仰에 관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야기시키는 것은 禁止된다. 蘇聯에서는 教會는 國家로부터 또한 學校는 教會로부터 分離된다.

第53條 家族은 國家の 保護를 받는다. 結婚은 女子와 男子의 자유로운 合意에 의하여 成立되며, 夫婦는 家族關係에서 완전하게 平等하다.

國家는 광범위한 兒童保護施設의 設置와 發展, 生活서비스와 公共給食의 실시 및 改善, 出產手當의 支給, 子女가 많은 家族에 대한 補助金 支給과 特전의 부여, 기

타 補助金의 支給 및 支援 등을 제공함으로써 家庭을 지원한다.

第54條 蘇聯市民은 身體의 不可侵이 보장된다.

누구든지 裁判所의 決定 또는 檢事의 許可 없이 逮捕되지 아니한다.

第55條 蘇聯市民은 住居의 不可侵이 보장된다. 누구든지 法의 근거 없이 居住者의 意思에 반하여 住居地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6條 市民의 私生活, 書信往來, 電話通貨 및 電報의 祕密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된다.

第57條 個人의 존중, 市民의 權利와 自由의 保護는 모든 國家機關, 社會團體 및 公務員의 義務이다. 蘇聯市民은 名譽와 尊重, 生命, 健康, 身體의 自由와 財產에 대한 침해로부터 裁判所의 보호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第58條 蘇聯市民은 公務員, 國家機關 및 社會團體들의 행동에 대하여는 訴願할 權利를 가진다. 이 訴願은 法律이 정한 節次와 期限內에 審查된다. 法律을 위반하고 越權하여 市民의 權利를 侵害하는 公務員의 行위는 法律에 정하여진 節次에 따라 裁判所에 提訴할 수 있다.

蘇聯市民은 國家機關, 社會團體 및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에 대하여 賠償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第59條 權利와 自由의 行使는 市民의 義務履行과 불가분의 關係가 있다.

蘇聯市民은 蘇聯의 憲法과 法律을 준수하고, 社會主義的 共同生活規則을 준수하며, 蘇聯市民의 名譽와 威嚴을 유지하여야 한다.

第60條 각자가 選擇한 社會的으로 有用한 생활분야에서 성실하게 勞動하고, 法律을 严格하게 준수하는 것은 勞動能力을 가진 各蘇聯市民의 義務와 名譽이다. 社會的으로 有益한 労動을 회피하는 것은 社會主義 社會原則에 矛盾된다.

第61條 蘇聯市民은 社會主義 財產을 保護하고 強化할 業務를 진다. 國家的・社會的 財產의 窃取 및 낭비와 투쟁하고 人民의 財產을 節約하여 사용하는 것은 蘇聯市民의 義務이다. 社會主義 財產을 침해하는 者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處罰된다.

第62條 蘇聯市民은 蘇聯의 利益을 수호하고 蘇聯의 權力과 威嚴을 強化시킬 義務를 진다.

社會主義 祖國의 防衛는 모든 蘇聯市民의 神聖한 義務이다. 祖國에 대한 반역은 人民에 대한 가장 중대한 犯罪이다.

第63條 蘇聯 軍隊에서의 軍服務는 蘇聯市民의 名譽로운 義務이다.

第64條 다른 市民의 民族的 존엄을 존중하고 多民族 蘇聯의 構成共和國들간과 民族들간의 友好를 強化하는 것은 蘇聯 市民의 義務이다.

第65條 蘇聯市民은 他人의 權利와 法的 利益을 존중하고, 反社會的인 行위에 非妥協的인 態度를 취하며 公共秩序維持에 協力할 義務를 진다.

第66條 蘇聯市民은 兒童 養育에 關心을 기울이고, 그들이 社會的으로 有益한 勞動을 할 수 있도록 教育시키며 社會主義 社會의 훌륭한 構成員으로 養育할 義務를 진다. 子女는 父母를 부양하고 父母에 助力하여야 할 義務를 진다.

第67條 蘇聯市民은 自然을 보호하고 天然資源을 보존할 義務를 진다.

第68條 蘇聯市民은 歷史的 記念物과 기타 文化財를 보존할 義務를 진다.

第69條 他國國民과의 友好協力關係를 增進하고, 世界平和의 유지강화에 助力하는것은 蘇聯市民의 國際的 義務이다.

第3編 蘇聯의 民族 및 國家構造

第8章 蘇聯은 聯邦國家이다

第70條 소비에트 社會主義聯邦共和國은 자유로운 民族自決 및 平等한 權利를 가진 소비에트 社會主義 共和國의 自發的 統合結果로 形成된 單一聯邦制 多民族國家이다.

蘇聯은 國民의 國家的 統一을 구현하고, 共產主義를 共同으로 建設하기 위하여 모든 聯邦構成共和國과 民族들을 結束시킨다.

第71條 소비에트 社會主義聯邦共和國은 다음 共和國들을 統合한다.

「러시아」소비에트 社會主義共和國

「우크라이나」소비에트 社會主義共和國

「白러시아」소비에트 社會主義共和國

「우즈베크」소비에트 社會主義共和國

「카자흐」소비에트 社會主義共和國

「그루지아」소비에트 社會主義共和國

「아제르바이잔」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

「리투아니아」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

「몰다비아」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

「라트비아」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

「키르기즈」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

「타지크」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

「아르메니아」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

「투르크멘」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

「에스토니아」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

第72條 각 聯邦構成共和國은 蘇聯으로 부터 자유롭게 脫退할 權利를 가진다.

第73條 國家權力 및 行政의 最高機關들에 의하여 代表되는 소비에트 社會主義聯邦
共和國의 管轄權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蘇聯에의 新共和國의 加入승인 및 聯邦構成共和國내에 新自治共和國과 新自治
州 形成의 승인
2. 蘇聯의 國境決定 및 聯邦構成共和國간의 境界變更의 승인
3. 共和國 및 地方의 國家機關의 組織과 活動에 대한 一般原則의 設定
4. 共和國 立法規範의 統一性保障 및 蘇聯과 聯邦構成共和國의 立法에 관한 原則
의 확정
5. 統一된 社會·經濟政策의 추진 : 聯邦構成共和國 經濟의 指導, 天然資源의 보존
과 合理的 利用을 위한 一般措置와 科學技術 進步의 기본적 方向의 決定, 蘇聯
의 經濟·社會發展을 위한 國家計劃의 作成과 承認 및 이들 計劃의 수행에 대
한 보고의 승인
6. 蘇聯의 統合豫算의 편성·승인, 豫算執行에 관한 보고의 승인, 單一 貨幣 및 信
用制度의 管理, 蘇聯豫算 編成을 위한 租稅·稅收의 決定 및 價格·賃金政策의
決定
7. 聯邦管轄下의 企業·組合의 諸經濟分野의 지도 및 聯邦構成共和國 管轄下의 產
業體의 종합적 지도.
8. 平和와 戰爭의 問題, 蘇聯 主權의 수호, 蘇聯의 國境 및 領土의 보전, 防衛組織
및 軍隊의 지도
9. 國家의 安全保障

10. 國際關係에 있어서 蘇聯을 代表하고 蘇聯과 外國 및 國際組織과의 關係와 聯邦構成共和國과 外國 및 國際組織과의 關係에 대한一般的節次와 協調를 승인하며, 國家獨占에 基礎한 外國貿易과 기타 對外經濟活動의 관할
11. 蘇聯憲法 준수의 監督 및 聯邦構成共和國 憲法의 蘇聯憲法에 대한 적합성 확보
12. 기타 全聯邦的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問題의 解決

第74條 聯邦 法律은 모든 聯邦構成共和國내에서 동일한 效力を 갖는다.

聯邦構成共和國 法律과 聯邦 法律이 저촉되는 경우, 聯邦의 法律이 우선한다.

第75條 蘇聯의 領土는 單一하며 聯邦構成共和國의 領土를 포함한다. 蘇聯의 主權은 領土 전체에 미친다.

第9章 聯邦構成 소비에트 社會主義共和國

第76條 聯邦構成共和國은 蘇聯內의 여타 소비에트共和國과 結合된 主權인 소비에트 社會主義國家이다.

聯邦構成共和國은 蘇聯 憲法 第73條에 명시된 범위외에 자국 영토내에서 獨自의 으로 國家權力を 행사한다.

聯邦構成共和國은 蘇聯憲法에 적합하고 각 共和國의 特殊性을 고려한 固有의 憲法을 가진다.

第77條 聯邦構成共和國은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 蘇聯邦最高會議, 蘇聯邦最高會議幹部會, 聯邦評議會, 聯邦政府 및 기타 聯邦의 機關에 있어서 聯邦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의 해결에 참여한다. 聯邦構成共和國은 資國의 領土內에서의 聯邦에 속하는 권한의 행사를 지원하며, 聯邦에 대한 國家權力 및 最高行政機關의 결정을 시행한다. 聯邦構成共和國은 그 관할권한에 속하는 문제에 관하여 聯邦이 관할하는 企業, 시설 및 組織의 활동을 조정하고 감독한다.

第78條 聯邦構成共和國의 領土는 共和國의 同意없이 變更할 수 없다. 聯邦構成共和國간의 國境은 關聯 共和國의 相互協議에 의하여 變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聯邦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第79條 聯邦構成共和國은 自國內에 地方, 州, 管區, 地區 등의 구분을 정하고 行政區域 그밖의 問題들을決定한다.

第80條 聯邦構成共和國은 外國과 관계를 수립하고 條約을 締結하며, 外交官 및 領事를 相互交換하며 國際組織의 活動에 參加할 權利를 가진다.

第81條 聯邦構成共和國의 主權은 蘇聯의 보호를 받는다.

第10章 소비에트 社會主義 自治共和國

第82條 自治共和國은 聯邦構成共和國에 속한다. 自治共和國은 聯邦과 聯邦構成共和國 權限밖에서는 그 管轄權내에 속한 문제를 獨自的으로 처리한다. 自治共和國은 蘇聯 憲法 및 聯邦構成共和國 憲法에 적합하고 自治共和國의 特수성을 고려한 固有한 憲法을 가진다.

第83條 自治共和國은 聯邦과 聯邦構成共和國 각각의 最高 國家權力 및 行政機關을 통하여 蘇聯 및 聯邦構成共和國 管轄權에 속하는 問題들의 政策決定에 參加한다. 自治共和國은 그 領土내에서 綜合的인 經濟·社會的 發展을 도모하고 聯邦과 聯邦構成共和國의 全權을 행사함에 協助하며, 聯邦과 聯邦構成共和國의 國家權力 및 行政機關의 決定을 수행한다.

自治共和國은 그 관할권에 속하는 問題에서는 蘇聯이나 聯邦構成共和國 管轄에 속하는 企業, 機關 및 團體의 活動을 調整·監督한다.

第84條 自治共和國 領土는 自治共和國의 同意없이 變更될 수 없다.

第85條 「러시아」소비에트 社會主義共和國에서는 「바시키르」, 「부리야트」, 「다케스탄」, 「카바르디노 밸카리아」, 「칼뮈크」, 「카렐리아」, 「코미」, 「마리」, 「모르도바」, 「北오세찌아」, 「타타르」, 「투바」, 「우드무르트」, 「체첸-잉구쉬」, 「추바쉬」, 「야쿠트」 등 소비에트 社會主義自治共和國이 있다.

「우즈베크」 소비에트 社會主義共和國에는 「카라·칼파크」소비에트 社會主義自治共和國이 있다.

「그루지아」소비에트 社會主義共和國에는 「아브하즈」, 「아즈하르」소비에트 自治共和國이 있다.

「아제르바이잔」소비에트 社會主義共和國에는 「나히체반」소비에트 社會主義自治共和國이 있다.

第 11 章 自治州 및 自治管區

第 86 條 自治州는 聯邦構成共和國에 속한다. 自治州에 관한 法律은 自治州 人民代議員 소비에트의 提案에 따라 聯邦構成共和國 最高會議에 의하여 채택된다.

第 87 條 「러시아」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에는 「아디게이」, 「고르노·알타이」, 유대인, 「카라차이·체르케스」, 「하카스」自治州가 있다.

「그루지아」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에는 「South Ossetia」自治州가 있다.

「아제르바이잔」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에는 「나고르노 카라바흐」自治州가 있다.

「타지크」소비에트 社會主義共和國에는 「고르노·바다흐샨」自治州가 있다.

第 88 條 自治管區는 地方 또는 州에 속한다. 自治管區에 관한 法律은 해당 聯邦構成共和國 最高會議에 의하여 채택된다.

第 4 編 人民代議員 大會와 그 選舉節次

第 12 章 人民代議員大會 制度와 活動原則

第 89 條 各級 人民代議員大會 蘇聯 人民代表大會와 蘇聯 最高會議,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 人民代表大會와 最高會議, 各級地方人民代議員大會, 地方, 州, 自治州, 自治管區, 區域, 市, 市區, 部落, 農村의 人民代議員 大會는 國家權力 代表機關의 單一體系를 구성한다.

第 90 條 人民代議員의 大會 任期는 5年으로 한다.

人民代議員 大會選舉는 늦어도 해당 國家權力機關들의 임기만료 4個月前에 결정한다.

第 91 條 全聯邦的, 共和國的, 地方的 意義를 가진 중요한 問題들은 人民代議員大會의 會議들과 最高會議 地方大會에서 해결되거나 또는 그들에 의하여 人民投票에 회부된다.

人民代議員大會는 最高會議代議員들과 最高會議 議長들을 選出한다. 地方人民代議員 大會는 大會議長을 選出한다. 市(地區管轄의 都市들), 部落과 農村소비에트들을 제외한 最高會議들과 地方人民代議員 大會들은 常任委員會를 구성한다.

人民代議員 大會가 選出하거나 任命하는 公務員들은 그 職位에 2回 以上 連任할

수 없다. 어떤 公務員이든 職務를 정당하게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 解職될 수 있다.

第92條 人民代議員 大會는 國家的 監督을 企業, 機關들과 團體에서의 勞動者들의 社會的 監督과 結合하는 人民監督機關을 구성한다

人民監督機關들은 法의 준수, 國家綱領과 과업수행여부를 監督하며 國家規律違反, 地方分權主義와 課業에 대한 機關本位主義의 態度 發現, 非經濟와 낭비, 악습과 官僚主義와 戰爭하고 다른 監督機關들의 業務를 조정하며 國家機關 組織과 업무 개선에 助力한다.

第93條 人民代議員 大會는 直接 또는 大會가 創設한 機關들을 경유하여 國家·經濟·社會·文化 建設의 모든 部門들을 지도하고 決定들을 채택하며 그 執行을 보장하고 決定實行에 대한 監督을 실시한다.

第94條 人民代議員 大會의 活動은 問題들이 집단적이며 자유롭고 實務的인 討議와 決定 및 公開性, 執行 및 運營機關들과 大會가 創設하는 기타 機關들의 人民代議員大會와 住民들에 대한 定期的인 報告, 그 事業에의 市民들의 公眾위한 參與에 基礎하여 수립된다.

人民代議員 大會는 大會가 創設한 諸機關은 社會輿論을 고려하여 全國的, 地方的 意義를 가진 中要한 問題들을 市民들의 討議에 붙이고 소관업무와 決定에 대하여 市民들에게 體系적으로 보도한다.

第13章 選舉制度

第95條 人民代議員의 選舉는 單一委任 및 複數委任 選舉區들에서 普通·平等·直接 選舉權에 基礎하여 祕密投票로 실시된다. 聯邦法과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 法이 制定한 基準에 따라 社會團體들의 代表性를 보장할 目的으로 蘇聯邦人民代議員,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 人民代議員들의 3분의 1은 社會團體에 의하여 즉, 蘇聯共產黨, 職業同盟, 協同組合, 全聯邦 레닌共青同盟, 女性, 參戰老兵과 勞動老練家, 科學者協會, 創作同盟 및 法律에 의하여 制定된 規則에 따라 創設되고 全聯邦이나 聯邦構成共和國 機關에 所屬된 기타 諸團體에서 選出된다. 社會團體에서의 人民代議員 選舉는 당해 大會 및 會議 또는 全聯邦 및 聯邦構成共和國機關의 總會에서 실시된다.

第96條 選舉區들에서 人民代議員 選舉는 普通選舉이다. 滿 18歲가 된 蘇聯市民은 選舉權을 가진다. 각종 조직의 大會·會議의 全體代表 또는 그들의 全聯邦이나 構成共和國機關들의 總會參加者들은 社會團體의 人民代議員들을 選出할 權利를 가진다.

滿 18歲가 된 蘇聯市民은 人民代議員을 選出하고, 滿 21歲가 된 蘇聯市民은 蘇聯 人民代議員으로 選出될 수 있다.

蘇聯市民은 동시에 2 이상의 人民代議員 大會의 代議員으로 選出될 수 없다.

蘇聯邦 閣僚會議, 聯邦構成共和國과 自治共和國 閣僚會議, 地方人民代議員 大會 執行委員會(이러한 機關의 長들, 地方大會 執行委員會의 省, 局, 部의 幹部는 除外)에 所屬된 者와 判事, 國家仲裁委員은 자신을 任命 또는 選出한 人民代議員大會의 代議員이 될 수 없다.

裁判에 의하여 行爲無能力者로宣告된 者, 정신병자, 교화소에 수용된 者 및 裁判所의 決定에 의하여 強制治療를 받고 있는 者는 選舉에 참여하지 못한다.

第97條 選舉區들에서 실시되는 人民代議員 選舉는 平等하다. 각 選舉區에서 選舉人 은 한 表의 投票權을 가지고 있으며 選舉人們은 平等에 입각하여 選舉에 참여한다.

社會團體에서 실시되는 人民代議員 選舉時에 그 大會·會議의 代表 또는 總會參加者는 한 票의 投票權을 가지고 있으며 平等하게 選舉에 참여한다.

第98條 選舉區에서 실시되는 人民代議員 選舉는 直接選舉로 한다. 人民代議員들은 市民들에 의하여 직접 選出된다.

社會團體에서의 人民代議員은 그들의 大會·會議의 代表들 또는 그 全聯邦이나 蘇聯邦 構成共和國 總會參加者들에 의하여 간접 選出된다.

第99條 人民代議員 選舉에서의 投票는 祕密選舉이다. 選舉人们的 意思表示에 대한 그 어떠한 통제도 禁止된다.

第100條 각 選舉區들의 人民代議員 立候補者들을 추천할 權利는 勞動集團, 社會團體, 居住地別 選舉人們, 軍事地域의 各 軍務者 會議에서 가지며, 社會團體에서 人民代議員 立候補者들을 추천할 權利는 그들의 全聯邦이나 聯邦構成共和國 機關들이 가지며 이 機關들은 地方機關, 下級團體와 이러한 團體構成員들의 代議員立候補에 관한 제안들을 고려한다.

代議員 立候補者數는 制限되지 않는다. 각 選舉前會議 참가자는 討議에 자신을 비

롯하여任意의立候補者를 추천할 수 있다.

投票用紙에는 임의의數의立候補者를 明記할 수 있다.

選舉區의人民代議員을 選出하는 경우, 選舉區에서 추천된代議員立候補者個個人을 審議하고 해당選舉委員會에서 登錄할立候補者의 推薦決定을 채택하기 위하여區選舉前會議를 開催할 수 있다. 人民代議員選舉準備와施行에 관련된費用은 國費에서 충당된다.

第101條 人民代議員選舉準備는 公開的으로 실시된다. 勞動集團 및 社會團體代表들, 居住地別選舉人們과 軍事地域의 軍務者會議代表들로 구성되는選舉委員會들이 선거실시를 보장한다.

蘇聯市民들, 勞動集團과 社會團體들에는 代議員立候補者들의 政治的·實務的·個人的資質을 자유롭게 전면적으로 討論할 수 있는 機會 그리고 集會, 出版物, 텔레비전放送, 라디오放送을 통하여立候補者를贊成 혹은 反對하여宣傳할權利가 보장된다.

人民代議員選舉實施의 節次는 소비에트 社會主義共和國聯盟, 蘇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法令들에 의하여 規定된다.

第102條 選舉人們과 社會團體들은 그代議員들에게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해당人民代議員소비에트들은 요구사항을 審議하고 經濟 및 社會發展計劃을立案하며豫算編成 그리고 기타問題들에 관한決定을準備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요구사항들의 實行計劃을編成하고 그 실행에 대하여市民들에게公表한다.

第14章 人民代議員

第103條 代議員은 人民代議員大會에서 人民의 全權代表이다. 소비에트에서 代議員은 소비에트의事業에 참가하여 國家·經濟·社會 및 文化發達과 관련된諸問題들을 처리하고 소비에트決定의 이행을組織하며 國家機關, 企業, 團體 및組織들의事業을 監督한다.

代議員은 自記活動에서 全國的 利益을 지침으로 하여選舉區住民들의 要求 및選出한 社會團體의 利害關係를 고려하여選舉人과 社會團體의 요구사항을 실현하여야 한다.

第104條 代議員은 生產活動과 職務上의 活動을 병행하여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

人民代議員大會最高會議 및 人民代議員 大會의 會議期間中 또는 기타 法律이 정한 경우 代議員은 生活活動이나 職務上 活動의 責任이 免除되어 당해 共和國이나 地方豫算에 의하여 代議員의 활동과 관련된 經費가 補償된다.

第105條 代議員은 해당 國家機關과 公務員에 대한 質議權을 가지며 人民代表大會, 最高會議, 地方人民代議員大會 會議에서 그 質議에 응하여야 할 義務를 진다.

代議員은 代議員의 活動上 제기되는 問題들에 관하여 모든 國家機關, 企業, 團體 및 組織들을 이용하며 자신이 提起한 問題들의 審議에 參加할 權利를 가진다. 該當 國家機關, 社會團體, 企業, 團體 및 組織들의 指導者들은 지체없이 代議員과 회합하여 法에 규정된 기일내에 그가 제기한 問題들을 검토할 義務가 있다.

第106條 代議員에 대하여는 방해받지 아니하고 權利와 義務를 效果的으로 행사 또는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된다. 代議員의 免責權 및 代議員 活動에 대한 기타의 保障은 代議員의 身分에 관한 法과 기타 聯邦法律,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 法律에 規定되어 있다.

第107條 代議員은 자신의 업무, 人民代議員大會의 業務, 最高會議, 地方人民代議員大會의 業務에 관하여 자신을 代議員候補로 추천한 選舉人, 團體, 社會組織 또는 자신을 代議員으로 選出한 選舉人, 團體, 社會組織에 보고할 義務가 있다.
選舉人們이나 社會團體의 不信任을 받은 代議員은 法에 규정된 節次에 따라 多數의 選舉人과 그를 選出한 社會團體의 決定에 의하여隨時로 召喚될 수 있다.

第5編 蘇聯의 國家權力 및 行政의 最高機關

第15章 蘇聯 人民代議員大會와 最高會議

第108條 蘇聯의 最高權力機關은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이다.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는 蘇聯邦의 권한에 속하는 어떠한 문제도 스스로 검토하고 해결하는 권리를 가진다.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蘇聯憲法의 제정 및 그 改正
2. 蘇聯의 권한에 속하는 民族 國家組織에 관한 문제의 결정
3. 蘇聯에 대한 국경의 확정과 聯邦構成共和國間의 국경변경의 승인
4. 蘇聯의 내외정책에 대한 기본방침의 결정

5. 蘇聯의 經濟·社會發展을 위한 장기적 國家計劃과 가장 중요한 수준의 全聯邦計劃의 승인
6. 蘇聯邦最高會議의 組織 및 蘇聯邦最高會議議長의 선출
7. 蘇聯邦閣僚會議議長에 대한 임명의 승인
8. 蘇聯邦人民監督委員會議長, 蘇聯邦最高法院長, 蘇聯邦檢察總長, 蘇聯邦首席 國家仲裁官에 대한 임명의 승인
9. 蘇聯邦最高會議議長의 추천에 의한 蘇聯邦憲法監視委員會의 委員선출
10. 蘇聯邦最高會議에 의하여 채택된 法令의 취소
11. 人民投票의 실시에 관한 결정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는 蘇聯邦의 法律 및 결정을 蘇聯邦人民代議員 총 수의
다수표에 의하여 채택한다.

第109條 蘇聯邦 人民代議員大會는 2,250人의 代議員으로 구성된다. 代議員은 다음
과 같은 節次에 따라 選出된다.

750人的 代議員들은 동일한 選舉人數를 가진 地域選舉區들에서, 750人的 代議員
들은 民族地域選舉區들에서 다음과 같은 基準으로 選出한다.

32人的 代議員은 각 聯邦構成共和國에서, 11人的 代議員은 각 自治共和國에서 5
人的 代議員은 각 自治州에서, 1人的 代議員은 각 自治官區에서, 750人的 代議員
들은 聯邦 人民代議員 選舉에 대한 法令에 制定된 基準에 따라 全聯邦 社會團體
에서 選出한다.

第110條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의 第1次會議는 選舉後 2月 以內에 소집된다. 蘇聯
邦人民代議員大會는 資格審查委員會의 신청에 의하여 그 선출된 代議員의 全權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選舉法 違反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개개의 代議
員의 당선을 무효로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행한다.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는 蘇
聯邦最高會意에 의하여 소집된다.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의 定期會議는 年 1回 이
상 개최된다. 臨時會議는 蘇聯邦最高會議의 要의에 의하거나 蘇聯邦最高會議의
兩院 中 1月, 蘇聯邦大統領, 蘇聯邦人民代議員의 5分의 1以上의 제안 또는 그 最
高 國家權力機關에 의하여 대표되는 蘇聯邦構成共和國의 發議에 의하여 개최된
다. 選舉後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 第1次會議는 蘇聯邦人民代議員選舉를 관리하는
中央選舉委員會議長이 주재하고 그 後에는 蘇聯邦最高會議議長이 주재한다.

第111條 蘇聯邦最高會議는 蘇聯邦 國家權力を 가진 常設의 立法機關이자 監督機關

이다. 蘇聯邦最高會議는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에 의하여 蘇聯邦代議員大會에 대하여 報告의 의무를 가진다. 蘇聯邦最高會議는 兩院 즉 동일한 議員數의 聯邦會議와 民族會議로 구성된다. 蘇聯邦最高會議의 兩院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兩院은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에서 代議員의 전체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聯邦會議는 地域選舉區로부터의 蘇聯邦人民代議員과 社會組織으로부터의 蘇聯邦人民代議員 중에서 各聯邦構成共和國 또는 地域選舉人의 數에 따라 선출된 代議員으로 구성된다. 民族會議는 民族選舉區로부터의 蘇聯邦人民代議員과 社會組織으로부터의 蘇聯邦人民代議員 中에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선출되는 代議員 즉 各聯邦構成共和國으로부터 代議員 11人, 각 自治共和國으로부터 代議員 4人, 각 自治州로부터 代議員 2人 각 自治官區로부터 代議員 1人으로 구성된다.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는 聯邦會議와 民族會議의 構成員 中 每年 5分의 1을 교체한다. 蘇聯邦最高會議의 各院은 各院의 議長과 副議長 2人을 선출한다. 聯邦會議議長과 民族會議議長은 각 의원의 會議를 지도하고 그 院內秩序를 유지한다. 蘇聯邦最高會議의 兩院合同會議는 蘇聯邦最高會議長 또는 聯邦會議議長과 民族會議議長이 교대로 주재한다.

第112條 蘇聯邦最高會議는 蘇聯邦最高會議議長에 의하여, 소집되며 每年 각 會期의 기간은 일 반적으로 3個月 내지 4個月로 하되, 定期會期는 春季會期와 秋季會期로 구분하여 소집된다. 臨時會期는 蘇聯邦最高會議議長 또는 蘇聯邦大統領의 發議, 聯邦構成共和國의 最高國家權力機關 또는 蘇聯邦最高會議의 兩院의 어느 1院의 構成員의 3分의 1以上의 發議에 의하여 소집된다. 蘇聯邦最高會議의 會議는 兩院의 單獨會議와 合同會議 및 이러한 會議와 會議의 중간에 개최되는 兩院常任委員會와 蘇聯邦最高會議委員會의 會議로 구성되며 會議는 兩院의 單獨會議 또는 合同會議에서 개최 및 폐회된다. 蘇聯邦最高會議는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의 任期滿了後, 새로 선출되는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가 새로운 蘇聯邦最高會議를 구성할 때까지 그 全權을 가진다.

第113條 蘇聯邦最高會議는 다음 각號에 게기한 權限을 가진다.

1. 蘇聯邦人民代議員選舉를 공고하고, 蘇聯邦人民代議員選舉의 管理機關인 中央選舉委員會의 구성을 승인한다.
2. 蘇聯邦大統領의 提請에 이하여 聯邦閣僚會議議長을 임명한다.
3. 蘇聯邦閣僚會議議長의 제안에 의하여 聯邦閣僚會議의 구성과 그 變更을 承認하고 그 提請에 의하여 全聯邦省과 蘇聯邦國家安全委員會를 설치 또는 폐지한다.

4. 蘇聯邦人民監督委員會와 蘇聯邦最高法院의 構成員을 선출하고 蘇聯邦檢察總長과 蘇聯邦首席 國家仲裁官을 임명하며 蘇聯邦檢察廳協議會와 蘇聯邦 國家仲裁委員會를 승인한다.
5. 蘇聯邦最高會議에 의하여 組織되는 機關 및 蘇聯邦最高會議에 의하여 임명 또는 선출되는 公職者의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는다.
6. 蘇聯邦全域에서의 입법의 조정·통일을 기하고 蘇聯邦과 聯邦構成共和國에 대한 입법의 기본원칙을 정한다.
7. 蘇聯邦大統領은 蘇聯邦最高會議에 蘇聯邦閣僚會議 構成員의 總辭退 또는 그 承認을 提請한다. 蘇聯邦大統領은 蘇聯邦閣僚會議議長의 同意를 얻어 蘇聯邦政府의 閣僚를 解任하고 後任者를 지명하여 蘇聯邦最高會議의 承認을 要請한다.
8. 蘇聯邦法律의 해석권을 가진다.
9. 蘇聯邦大統領은 蘇聯閣僚會議의 決定과 命令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다.
10. 蘇聯邦大統領은 國防에 관한 國家機關의 활동을 조정한다. 蘇聯邦大統領은 蘇聯邦軍最高司領官이며 蘇聯邦軍最高司令部의 주요 幹部를 任命·更迭하고 最高軍人의 稱號를 수여하며 軍法會議의 法官을 임명한다.
11. 蘇聯邦의 國際條約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2. 外國에 대한 國家借款, 경제 기타 원조 및 外國으로부터 받은 國家借款과 信用에 관한 協定에 체결을 감독한다.
13. 방위와 國家安全保障에 대한 기본적 施策을 결정하고, 전국에 계엄령 또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침략에 의하여 상호방위를 위한 國際條約上의 의무를 이행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전쟁상태를 선언한다.
14. 國際平和와 安全의 유지에 관한 國際條約上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蘇聯邦軍의 병력사용에 대한 결정을 채택한다.
15. 군인의 계급칭호, 외교관의 등급 기타 특별칭호를 정한다.
16. 蘇聯邦의 勳章, 메달 및 명예칭호를 정한다.
17. 故免에 관한 全聯邦法令을 공포한다.
18. 蘇聯邦閣僚會議의 決定과 命令을 취소하는 권리를 가진다.
19. 聯邦構成共和國閣僚會議의 決定과 命令이 蘇聯邦의 憲法과 法律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20.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는 문제를 제외하고 蘇聯邦의 권한에 속하는 기타 여러문제를 해결한다. 蘇聯邦最高會議는 蘇聯邦의 法律과 결정을 채택한다.

蘇聯邦最高會議에 의하여 채택되는 法律과 결정은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가 정한 法律 기타 法令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21. 聯邦最高會議는 人民代議員會議 閉會中, 國民投票의 實施 與否를 결정한다.

第114條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와 蘇聯邦最高會議에서의 立法發議權은 蘇聯邦人民代議員 蘇聯邦最高會議의 聯邦會議·民族會議 및 蘇聯邦最高會議議長, 兩院常任委員會와 蘇聯邦憲法監視委員會, 蘇聯邦構成共和國과 自治共和國의 最高 國家權力機關, 自治州, 自治官區, 蘇聯邦人民監督委員會, 蘇聯邦最高法院, 蘇聯邦檢察總長, 蘇聯邦首席國家仲裁官이 가진다. 全聯邦機關에 의하여 대표되는 社會組織과 蘇聯邦과학아카데미도 法案提出權을 가진다.

第115條 蘇聯邦最高會議의 審議에 제출된 法案들은 兩院의 單獨會議나 兩院合同會議에서 審議된다.

각 院의 過半數委員들이 法案에 대하여 贊成投票를 하는 경우에 蘇聯 法律로 채택된 것으로 看做된다.

蘇聯 最高會議의 發議 또는 蘇聯邦構成共和國 最高國家權力機關의 제안에 따라 채택된 法律草案과 國家生活의 가장 중요한 問題들을 全人民的 討議에 부쳐질 수 있다.

第116條 蘇聯邦最高會議 兩院은 蘇聯邦最高會議의 管轄에 속하는 모든 問題를 審議할 權限이 있다.

聯邦會議에서는 우선적으로 全國的·普遍的 意味를 지닌 社會·經濟發展과 國家建設 問題, 蘇聯 市民의 權利·自由·義務, 蘇聯의 對外政策, 蘇聯의 國防과 國家安全等의 問題가 審議된다.

民族會議는 우선적으로 民族的 平等의 保障問題, 소비에트 多民族國家의 全體利益이나 요구에 부합되는 國家·民族·民族的 團體의 問題, 蘇聯邦法律의 개선과 民族間 관계의 調整問題가 審議된다. 각 院은 自記權限에 속하는 問題들에 대한 決定을 채택한다. 한 院이 채택한 決定은 필요한 경우, 다른 院에 傳達되며 그 院이 贊成하면 蘇聯邦最高會議 決定의 效力を 가진다.

第117條 蘇聯邦最高會議의 聯邦會議와 民族會議間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문제

는 균등의 원칙에 따라 兩院에 의하여 組織되는 調停委員會에 移送하여 해결하며, 그 後 蘇聯邦最高會議의 聯邦會議와 民族會議에 의한 合同會議에서 다시 심의된다. 第118條 蘇聯邦最高會議 활동을 조직화하기 위하여 蘇聯邦最高會議議長을 長으로 하는 蘇聯邦最高會議幹部會를 설치한다. 蘇聯邦最高會議幹部會는 蘇聯邦最高會議의 聯邦會議議長과 民族會議議長, 그 副議長, 兩院의 常任委員會와 蘇聯邦最高委員會의 各院長 기타 蘇聯邦構成共和國로부터 각 1人의 聯邦人民代議員, 自治共和國로부터 각 2人 및 自治州와 自治官區로부터 各 1人の 대표자로 구성된다. 蘇聯邦最高會議幹部會는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와 蘇聯邦最高會議의 會議準備를 행하고 蘇聯邦最高會議 兩院常任委員會와 蘇聯邦最高會議 委員會의 활동을 조정하며, 蘇聯邦의 法案 기타 中요한 國家活動의 문제에 대한 全人民的 討議의 실시를 계획한다. 蘇聯邦最高會議幹部會는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 蘇聯邦最高會議와 그 兩院 및 蘇聯邦大統領이 제정한 蘇聯邦의 法律 기타 法令의 原文을 蘇聯邦構成共和國의 언어로 공포한다.

第119條 蘇聯邦最高會議議長은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에 의하여 5年的 任期를 가진 蘇聯邦人民代議員 중에서 祕密投票에 의하여 선출된다. 다만, 2回以上 연임될 수 없다. 蘇聯邦最高會議議長은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에서 祕密投票에 의하여 수시로 소환될 수 있다. 蘇聯邦最高會議議長은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와 蘇聯邦最高會議에 대하여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蘇聯邦最高會議議長은 蘇聯邦最高會議의 會議召集에 대한 결정과 기타의 문제에 관한 命令을 공포한다.

第120條 蘇聯邦最高會議의 聯邦會議와 民族會議는 法案의 작성, 蘇聯邦最高會議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의 예비심의와 준비,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와 蘇聯邦最高會議에 의하여 채택된 蘇聯邦法律 기타 결정의 시행을 촉진하고 國家機關·組織의 활동을 감독하기 위하여 蘇聯邦最高會議의 構成員 기타 蘇聯邦人民代議員 중에서 蘇聯邦最高會議 兩院常任委員會의 構成員을 선출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蘇聯邦最高會議 兩院은 균등의 원칙에 따라 蘇聯邦最高會議의 각 委員會를 설치할 수 있다. 蘇聯邦最高會議 및 그 兩院의 각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審查委員會, 監查委員會 기타 문제의 처리를 위한 委員會를 설치한다. 蘇聯邦最高會議와 兩院의 常任委員會 構成員의 5分의 1以下를 교체한다.

第121條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와 蘇聯邦最高會議에 의한 法律 기타 문제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蘇聯邦最高會議의 그 兩院常任委員會 또는 委員會에 의한 草案의 예

비심의를 거쳐 행한다. 蘇聯邦閣僚會議, 蘇聯邦人民監督委員會, 蘇聯邦最高法院과
蘇聯邦檢察廳 및 蘇聯邦 國家仲裁機關의 참여회를 구성하는 公職者의 임명과 선
출은 蘇聯邦最高會議의 그 兩院常任委員會 또는 委員會의 決議를 따라 행하여진
다. 모든 聯邦構成 國家의 社會機關, 組織 및 公務員은 蘇聯邦最高會議의 兩院常
任委員會 및 委員會의 요구를 수행하고 이러한 委員會에 필요한 자료와 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진다. 蘇聯邦最高會議委員會의 권고는 國家와 社會機關, 시설 및
組織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검토결과와 취하여진 조치는 蘇聯邦
最高會議委員會가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 122 條 蘇聯邦人民代議員은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의 會議 및 蘇聯邦最高會議의
會期에서, 蘇聯邦閣僚會議 기타 蘇聯邦人民代議員 大會 및 蘇聯邦最高會議에 의
하여 구성 또는 선출되는 機關의 지도자에 대하여 질문할 권리를 가지며 蘇聯邦
大統領에 대하여도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의 會議에서 질문할 권리를 가진다. 질
문을 받은 機關 또는 公務員은 3日 以內에 그 大會의 會議 또는 蘇聯邦最高會議
의 會期에서 답변하거나 文書로 회답할 의무를 가진다.

第 123 條 蘇聯邦人民代議員은 蘇聯邦代議員大會, 蘇聯邦最高會議, 그 兩院, 委員會 또
는 住民과의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대외활동에 필요한 一定期間 事務職 또는 生產
職의 從事義務로부터 면제된다. 蘇聯邦人民代議員은 蘇聯邦最高會議의 동의 없이
또한 蘇聯邦最高會議가 閉會中인 때에는 蘇聯邦最高會議幹部會의 동의 없이 刑事
責任을 지지 아니하며 구속되거나 裁判節次에 의하여 行政處罰을 받지 아니한다.

第 124 條 蘇聯邦憲法監視委員會는 政治 및 法律分野의 전문가 中에서 蘇聯邦人民代
議員大會에 의하여 선출되는 議長, 副議長 및 各聯邦構成共和國의 대표를 포함하
는 25人의 委員으로 구성된다. 蘇聯邦憲法監視委員會의 委員으로 선출된 者의 任期
는 10年으로 한다. 蘇聯邦憲法監視委員會의 委員으로 선출된 者는 그 法令에
의하여 同委員會의 監視를 받는 機關의 構成員으로 동시에 임명될 수 없다. 憲法
監視委員會의 委員으로 선출된 者는 자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獨립하여 행
동하며 蘇聯邦憲法에만 구속된다.

蘇聯邦憲法監視委員會는 다음 各號에 게기한 權限을 가진다.

1.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에 의하여, 同大會의 審議에 붙여지는 蘇聯邦의 法律案
및 기타 法令案이 蘇聯邦憲法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同大會에 제
시한다.

2. 蘇聯邦人民代議員의 5分의 1以上의 찬성을 얻어 蘇聯邦構成共和國 最高國家權力機關의 제안에 의하여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가 채택한 蘇聯邦의 法律 기타 法令이 蘇聯邦憲法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에 제시한다 蘇聯邦人民代議員 大會의 委任 또는 蘇聯邦最高會議의 제안에 의하여 蘇聯邦大統領의 命令이 蘇聯邦憲法 및 蘇聯邦法律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同大會에 제시한다.
3.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의 委任, 蘇聯邦最高會議, 蘇聯邦大統領, 蘇聯邦最高會議議長 및 蘇聯邦構成共和國 最高 國家權力機關의 제안에 의하여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 또는 蘇聯邦最高會議에 蘇聯邦構成共和國憲法이 蘇聯邦憲法에 부합되고 聯邦構成共和國의 法律이 蘇聯邦의 法律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4.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의 委任 또는 蘇聯邦最高會議代議員의 5分의 1以上, 蘇聯邦大統領 및 聯邦構成共和國 最高 國家權力機關의 제안에 의하여 蘇聯邦最高會議 또는 蘇聯邦大統領에게 蘇聯邦最高會議와 그 兩院이 채택한 法令과 이러한 機關에서 심의되고 있는 法令案이 蘇聯邦憲法과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에서 채택된 蘇聯邦의 法律에 부합되고 蘇聯邦閣僚會議의 決定과 命令이 蘇聯邦最高會議의 決定과 命令이 蘇聯邦最高會議에서 채택된 蘇聯邦의 法律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 및 蘇聯邦과 聯邦構成共和國이 체결한 國際條約과 기타 의무가 蘇聯邦憲法과 蘇聯邦法律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5.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의 위임 또는 蘇聯邦最高會議, 그 兩院, 蘇聯邦大統領, 蘇聯邦最高會議議長, 蘇聯邦最高會議 兩院常任委員會와 蘇聯邦最高會議委員會, 蘇聯邦閣僚會議, 聯邦構成共和國 最高 國家權力機關, 蘇聯邦人民監督委員會, 蘇聯邦最高法院, 蘇聯邦檢察總長, 蘇聯邦首席國家仲裁官, 社會組織의 全聯邦機關 및 蘇聯邦科學아카데미의 제안에 의하여 蘇聯邦憲法의 규정에 의한 檢察機關의 監督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다른 國家機關과 社會組織에 적용되는 표준적인 法令이 蘇聯邦憲法 및 蘇聯邦의 法律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蘇聯邦憲法監視委員會는 스스로 蘇聯邦最高國家權力 · 行政機關,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와 蘇聯邦最高會議에 의하여 組織되거나 선출된 기타 機關의 法令이 蘇聯邦憲法 및 蘇聯邦의 法律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권리를 가

진다. 法令 또는 그 개개의 규정이 蘇聯邦憲法 또는 蘇聯邦의 法律에 부합되지 아니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蘇聯邦憲法監視委員會는 당해 法令의 制定機關에 그 부분의 삭제를 위하여 의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同委員會에 의한 이러한 결정의 채택은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에서 채택한 蘇聯邦의 法律과 聯邦構成共和國의 法律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法令 또는 그 개개의 규정에 대한 執行을 정지시킨다. 法令 또는 그 개개의 규정에 위하여 市民의 權利와 自由가 침해된 경우에는 同委員會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그 法令 또는 그 개개의 규정에 대한 執行을 정지시킨다. 法令 또는 그 개개의 규정에 위하여 市民의 權利와 自由가 침해된 경우에는 同委員會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그 法令 또는 그 개개의 규정에 대한 效力은 상실된다. 法令을 제정한 機關은 蘇聯邦憲法 또는 蘇聯邦의 法律에 부합되도록 이를 改正하여야 한다. 부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改正되지 아니한 경우 蘇聯邦憲法監視委員會는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 蘇聯邦最高會議 또는 蘇聯邦閣僚會議에 대하여 보고의무를 지는 機關 또는 公職者가 제의한 蘇聯邦憲法 또는 蘇聯邦法律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法令의 폐지를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 蘇聯邦最高會議 또는 蘇聯邦閣僚會議에 요청한다. 蘇聯邦憲法監視委員會의 決定은 蘇聯邦人民代議員 定員의 3分의 2以上의 동의를 얻은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기각할 수 있다. 蘇聯邦憲法監視委員會의 組織과 활동절차는 蘇聯邦憲法監視法으로 정한다.

第125條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와 蘇聯邦最高會議는 이에 대하여 보고의무를 가진 모든 國家機關을 감독한다. 蘇聯邦最高會議와 蘇聯邦大統領은 蘇聯邦人民監督委員會의 활동을 지도한다. 人民監督機關의 組織과 활동절차는 蘇聯邦人民監督法으로 정한다.

第126條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 蘇聯邦最高會議 및 이러한 여러기관의 활동절차는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 및 蘇聯邦最高會議 規則과 蘇聯邦憲法에 의하여 공포되는 蘇聯邦의 기타 法律로 정한다.

第15章의 2 蘇聯邦大統領

第127條 소비에트國家 즉, 소비에트社會主義聯邦共和國의 國家元首는 蘇聯邦大統領이다.

第127條의 1 35歲以上 65歲以下의 蘇聯邦市民은 蘇聯邦大統領으로 선출될 수 있다. 蘇聯邦大統領職에는同一人이 2回以上重任될 수 없다. 蘇聯邦大統領은 蘇聯邦市民에 의한 普通·平等·直接·祕密選舉에 의하여 5年任期로 선출된다. 蘇聯邦大統領의 選舉는 유권자의 過半數가 참가한 경우에 유효하다. 후보자는 蘇聯邦全域과 聯邦構成共和國에서 투표에 참가한 유권자의 과반수의 지지를 얻는 경우에 당선된다. 蘇聯邦大統領의 選舉節次는 蘇聯邦의 法律로 정한다. 蘇聯邦大統領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직책에서의 급여만을 받을 수 있다.

第127條의 2 蘇聯邦大統領은 취임에 즈음하여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에서 선서를 행한다.

第127條의 3 蘇聯邦大統領은 다음各號에 게기한 權限을 가진다.

1. 蘇聯邦市民의 권리와 자유 및 蘇聯邦의 憲法과 法律의 준수를 보장한다.
2. 蘇聯邦과 聯邦構成共和國의 主權과 國家의 안전 및 영토의 보존 또는 蘇聯邦의 民族的 國家構組에 대한 원칙의 실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國內 및 國際關係에 있어서 소비에트社會主義聯邦共和國을 대표한다.
4. 蘇聯邦의 國家權力과 行政의 最高機關間의 상호협력을 보장한다.
5. 國家의 상황에 대하여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에 年例報告書를 제출한다. 蘇聯邦의 國內外中 특별히 중요한 問題에 대하여 蘇聯邦最高會議에 보고한다.
6. 蘇聯邦最高會議에 蘇聯邦閣僚會議議長, 蘇聯邦人民監督委員會議長, 蘇聯邦最高法院長, 蘇聯邦檢察總長, 蘇聯邦國家仲裁法院長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의 승인을 요구한다. 蘇聯邦最高法院 이외의 上記 公職者의 해임을 蘇聯邦最高會議 및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에 제안하는 것도 포함된다.
7. 蘇聯邦大統領은 聯邦會議의 의견을 고려하고 蘇聯邦最高會議의 승인을 얻어 閣僚會議를構成한다. 蘇聯邦大統領은 内閣을 개편하고 蘇聯邦最高會議에서 首相候補를 추천하며 蘇聯邦最高會議의 승인을 얻어 首相 및 閣僚를 해임한다.
8. 蘇聯邦의 法律案에署名한다. 法律案에 異議가 있는 경우에는 14日 이내에 再議를 위하여 蘇聯邦最高會議에 還附할 권리를 가진다. 蘇聯邦最高會議의 兩院이 각각 3分의 2以上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종전에 행한 의결을 재승인한 경우에는 蘇聯邦大統領은 法律案에 서명한다.
9. 憲法 또는 法律에 대한 違反行爲가 발생한 경우, 大統領은 閣僚會議의 決定 및 閣僚와 그 下部機關의 활동을 정지시키고 共和國政府의 決定을 중지시킬 수 있다.

는 권한을 가진다.

10. 蘇聯邦大統領은 蘇聯邦國家安全委員會를 主管하고 聯邦會議의 意見과 最高會議의 승인을 얻어 그 構成員을 임명한다. 蘇聯邦國家安全委員會는 蘇聯邦의 國防政策 및 國家·經濟·環境面에서의 안전, 災害對策 및 非常事態, 사회질서의 유지를 담당한다.
11. 외교교섭을 주도하고 蘇聯邦의 國際條約에 署名한다. 蘇聯邦에 주재하는 外交使節의 信任狀과 召喚狀을 受理한다. 外國 및 國際組織에 주재하는 蘇聯邦의 外交使節을 임명·소환하고 그에게 外交官의 最高等級 기타 特別칭호를 수여한다.
12. 蘇聯邦의 훈장과 기장을 수여하고 蘇聯邦의 명예칭호를 부여한다.
13. 蘇聯邦國籍의 취득, 포기, 박탈 기타 망명자보호의 문제를 결정한다. 故免을 행한다.
14. 총동원령 또는 부분적 동원령을 선포한다.

蘇聯邦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는 경우 선전포고를 행하고 즉시 이를 蘇聯邦最高會議의 심의에 붙인다. 蘇聯邦의 방위와 市民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계엄을 선포한다. 계엄제도와 그 시행절차는 法律로 정한다.

15. 蘇聯邦市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蘇聯邦構成共和國의 最高會議幹部會 또는 國家最高機關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이를 시행한다. 이러한 동의없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경우에는 자체없이 蘇聯邦最高會議에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비상사태의 승인에 관한 蘇聯邦最高會議의 결정은 대의원 총수의 3分의 2以上의 찬성에 의하여 정한다.

上記의 경우, 蘇聯邦大統領은 蘇聯邦構成共和國의 주권과 영토의 보전을 위하여 蘇聯邦大統領에 의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 비상사태 및 蘇聯邦大統領의 비상조치에 관한 제도는 法律로 정한다.

16. 蘇聯邦最高會議의 聯邦會議와 民族會議間에서의 의견의 불일치로 인하여 蘇聯邦憲法 第117條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조정이 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蘇聯邦大統領은 계쟁문제를 검토하여 타협이 가능한 해결책을 정한다. 이러한 해결책에 의하여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蘇聯邦의 國家權力 및 最高行政機關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될 수 있는 현실적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蘇聯邦大統

領은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에 蘇聯邦最高會議에 대한 새로운 構成員의 선출을
제안할 수 있다.

第127條의 4 蘇聯邦大統領은 蘇聯邦構成共和國의 最高國家公職者로 구성되는 蘇聯
邦國家安全委員會를 주재한다. 蘇聯邦國家安全委員會에는 自治共和國, 自治州 및
自治管區의 最高國家公職者도 참가할 權限을 가진다. 蘇聯邦國家安全委員會는 聯
邦條約의 遵守에 관한 事項을 검토하고 소비에트國家의 民族政策을 실현하는 조
치를 수립한다. 蘇聯邦最高會議의 民族會議에 係爭問題의 해결 및 民族間의 관계
에 관한 係爭狀態의 調停을 권고한다. 蘇聯邦構成共和國의 活動을 調整하고 蘇聯
邦大統領의 권한에 속하는 全聯邦的인 문제의 해결에 蘇聯邦構成共和國의 參加를
보장한다. 民族國家가 결성되지 아니한 民族의 이익에 저촉되는 문제는 그 民族의
대표가 参加한 蘇聯邦國家安全委員會에서 검토한다. 蘇聯邦國家安全委員會는 蘇
聯邦最高會議의 議長과 兩院의 議長이 参加한다.

第127條의 5 蘇聯邦大統領을 보좌하여 蘇聯邦의 國內外政策에 관한 基本方向의 樹
立과 國家의 安全보장에 관한 계획의 실현을 임무로 하는 蘇聯邦國家安全委員會
를 둔다. 蘇聯邦國家安全委員會 構成員은 蘇聯邦大統領이 임명한다. 蘇聯邦閣僚會
議議長은 蘇聯邦國家安全委員會의 構成員에 포함된다. 蘇聯邦最高會議의 議長은
蘇聯邦國家安全委員會의 會議에 參加할 權限을 가진다.

第127條의 6 蘇聯邦大統領은 國家의 중요한 内외정책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蘇聯
邦國家安全委員會 蘇聯邦大統領評議會의 合同會議를 개최한다.

第127條의 7 蘇聯邦大統領은 蘇聯邦의 憲法과 法律을 執行함에 있어서, 그에 의하
여 國家의 전영토에서의 강제력을 가진 명령을 발할 수 있다.

第127條의 8 蘇聯邦大統領은 불가침의 권리를 가며 蘇聯邦의 憲法과 法律을 위반
한 경우에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에 의하여서만 해임될 수 있다.

이 결정은 蘇聯邦憲法監視委員會 결의가 있고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 또는 蘇聯邦
最高會議의 發議가 있는 경우에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에 대한 代議員 總數의 3分
의 2以上의贊成投票에 의하여 행하여 진다.

第127條의 9 蘇聯邦大統領은 第127條의 3 第1號 및 第12號에 정한 직무의 수행은
이를 蘇聯邦最高會議 議長과 蘇聯邦閣僚會議 議長에게, 第127條의 3 第13號에 정
한 직무의 수행은 이를 蘇聯邦最高會議 議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127條의 10 부득이한 事由로 인하여 蘇聯邦大統領이 그 職務를 계속하여 遂行할

수 없게 된 경우, 新任大統領이 선출될 때까지 蘇聯邦最高會議議長이 그 權限을 代行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蘇聯邦閣僚會議議長이 代行한다. 이 경우 新任蘇聯邦大統領의 選舉는 3月 以內에 실시되어야 한다.

第16章 蘇聯邦閣僚會議

第128條 蘇聯邦閣僚會議은 蘇聯邦政府는 蘇聯邦國家權力에 대한 最高의 執行·處理機關이다.

第129條 蘇聯邦閣僚會議는 蘇聯邦最高會議의 聯邦會議와 民族會議의 合同會議에서 蘇聯邦閣僚會議長, 第1副議長 및 副議長, 聯邦長官, 蘇聯邦國家委員會議長으로 구성된다. 蘇聯邦構成共和國閣僚會議議長은 當然職 蘇聯邦閣僚會議의 構成員이 된다. 蘇聯邦最高會議는 蘇聯邦閣僚會議議長의 提請에 따라 蘇聯邦의 다른 여러 機關 및 組織의 指導者를 蘇聯邦政府의 構成員으로 선임할 수 있다. 蘇聯邦閣僚會議는 새로 구성된 蘇聯邦最高會議에 대하여 第1會期中에 總辭退의 意思를 표명한다.

第130條 蘇聯邦閣僚會議는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와 蘇聯邦最高會議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報告의 의무를 진다. 새로 구성된 蘇聯邦閣僚會議는 蘇聯邦最高會議에 대하여는 1年에 1回 以上, 蘇聯邦大統領에 대하여는 定期的으로 그 활동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蘇聯邦最高會議는 自身의 發議에 의하여 또는 蘇聯邦大統領의 提請에 의하여 蘇聯邦政府에 대한 不信任을 선언할 수 있다. 이에 관한決定은 蘇聯邦最高會議 總議員의 3分의 2 以上的 多數決에 의한다.

第131條 蘇聯邦閣僚會議는 蘇聯邦憲法에 의하여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 蘇聯邦最高會議 및 蘇聯邦大統領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蘇聯邦의 國家行政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권리를 가진다. 蘇聯邦閣僚會議는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號에 게기한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國民經濟 및 社會·文化建設에 관한 지도를 행한다.

人民의 복지와 文化的 향상을 보장하고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 천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보호하며, 통화·신용제도를 강화하고 통일된 價格·賃金·社會保障政策을 실시하며 國家保險 및 통일된 會計·統計制度의 시행계획을 채정하여 시행한다.

工業・建設・農業企業 및 企事業活動, 運輸・通信企業, 銀行 기타 聯邦의 관할에 속하는 組織과 시설의 관리를 계획한다.

2. 蘇聯邦의 經濟・社會發展을 위한 短期 또는 長期의 國家計劃을 작성하고 蘇聯邦豫算을 편성하여 蘇聯邦最高會議에 제출한다.

國家計劃의 시행과豫算의 執行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蘇聯邦最高會議에 계획의 시행과豫算의 執行에 관한 보고를 행한다.

3. 市民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 國家利益과 소유의 보호 및 社會질서의 유지에 관한 조치를 취한다.

4. 國家의 방위와 안전의 보장에 관한 조치를 강구한다.

5. 外國과의 관계, 대외무역, 蘇聯邦과 外國과의 경제・과학기술・文化협력의 분야에서의 전반적 시책을立案하고, 蘇聯邦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政府間의 國際條約을 승인 또는 파기한다.

6. 필요한 경우에는 蘇聯邦閣僚會議 傘下에 委員會, 總局 기타 部署를 둔다.

第132條 國民經濟의指導와 그發展의 보장에 관한 사항 및 國家行政에 관한 기타事項의 해결을 위하여 蘇聯邦閣僚會議常設機關으로서 蘇聯邦閣僚會議議長, 第1副議長, 副議長으로 구성되는 蘇聯邦閣僚會議幹部會를 둔다. 蘇聯邦閣僚會議幹부會에는 蘇聯邦閣僚會議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蘇聯邦政府의 閣僚도 참여할 수 있다.

第133條 蘇聯邦閣僚會議는 蘇聯邦의 法律,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와 蘇聯邦最高會議의 결정 및 蘇聯邦大統領의 명령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결정과 명령을 공포하고 그 시행을 확인한다. 蘇聯邦閣僚會議의 결정과 명령은 蘇聯邦의 全域에서 執行된다.

第134條 蘇聯邦閣僚會議는 聯邦의 관할에 속하는 문제에 대하여 蘇聯邦構成共和國閣僚會議의 결정과 명령의 努力を 정치시키거나 蘇聯邦의 각성과 蘇聯邦國家委員會 기타 機關이 정한 法令을 취소하는 권리를 가진다.

第135條 蘇聯邦閣僚會議는 全聯邦省과 聯邦・共和國省 및 蘇聯邦國家委員會 기타機關의 활동을 통일하고 방향을 제시한다. 全聯邦省 및 蘇聯邦國家委員會는 蘇聯邦全域에 걸쳐 직접 또는 그 설치하는 機關을 통하여, 그 위임을 받은 관리부문을 지도하거나 수개의 부문에 걸치는 관리를 행한다. 蘇聯邦의 聯邦・共和國省 및 蘇

聯邦國家委員會는 원칙적으로 蘇聯邦構成共和國의 그 省, 國家委員會 기타 機關을 통하여 그 위임을 받은 관리부문을 지도하거나 수개의 부문에 대한 관리를 행하고 蘇聯邦의 관할에 속하는 개개의 企業 및 企業活動을 직접 관리한다. 蘇聯邦의 省 및 國家委員會는 위임받은 行政分野의 상황과 발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蘇聯邦의 法律 및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와 蘇聯邦最高會議의 결정, 蘇聯邦大統領의 명령 및 蘇聯邦閣僚會議의 결정과 명령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法令을 공포하고 그 시행을立案하며 확인한다.

第136條 蘇聯邦閣僚會議와 그 幹部會의 권한, 그 활동의 절차, 閣僚會議와 기타 國家機關과의 관계, 全聯邦省과 聯邦·共和國省 및 蘇聯邦國家安全委員會의 구성은 蘇聯邦閣僚會議法으로 정한다.

第6編 聯邦構成共和國에서의 國家權力과 行政機關構成의 기초

第17章 聯邦構成共和國의 國家權力과 行政의 最高機關

第137條 蘇聯邦構成共和國에 대한 國家權力의 最高機關은 聯邦構成共和國最高會議이며 人民代議員大會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蘇聯邦構成共和國에 대한 國家權力의 最高機關은 人民代議員大會이다.

第138條 蘇聯邦構成共和國의 國家權力에 대한 最高機關의 권한, 기구 및 활동절차는 蘇聯邦構成共和國의 憲法과 法律로 정한다.

第139條 蘇聯邦構成共和國最高會議는 蘇聯邦構成共和國의 國家權力에 대한 最高의 執行·處理機關인 蘇聯邦構成共和國閣僚會議 즉 蘇聯邦構成共和國政府를 組織한다.

第140條 蘇聯邦構成共和國閣僚會議는 蘇聯邦과 蘇聯邦構成共和國의 法令과 蘇聯閣僚會議의 결정과 명령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그 결정과 명령을 공포하고 그 시행을 계획하며 확인한다.

第141條 蘇聯邦構成共和國閣僚會議는 自治共和國閣僚會議의 결정과 명령의 執行을 정지하고 地方, 州, 市의 人民代議員大會의 執行委員會 또는 州의 구분이 되지 아니한 蘇聯邦構成共和國에 있어서는 地區와 그 市의 人民代議員大會의 執行委員會의 결정과 명령을 취소하는 권리를 가진다.

第142條 蘇聯邦構成共和國閣僚會議는 蘇聯邦構成共和國의 聯邦·共和國省 및 共和國省, 國家委員會 기타 機關의 활동을 통일하고 방향을 제시한다. 蘇聯邦構成共和國의 聯邦·共和國省 및 國家委員會는 蘇聯邦構成共和國閣僚會議 및 蘇聯邦의 聯邦·共和國省 또는 蘇聯邦國家委員會에 종속되며 그로 부터 위임받은 관리부문을 지도하거나 수개의 부문에 대한 관리를 수행한다. 共和國省 및 國家委員會는 蘇聯邦構成共和國에 종속되며 그 위임을 받은 관리부문을 지도하거나 수개의 부문에 대한 관리를 수행한다.

第18章 自治共和國의 國家權力과 行政의 最高機關

第143條 自治共和國에 대한 國家權力의 最高機關은 自治共和國의 最高會議이고 人民代議員大會를 두도록 되어 있는 自治共和國의 最高權力機關은 人民代議員大會이다.

第144條 自治共和國最高會議는 自治共和國의 國家權力에 대한 最高의 執行·處理機關인 自治共和國閣僚會議 즉 自治共和國政府를 組織한다.

第19章 國家權力과 地方行政機關

第145條 蘇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律에 의하여 설치되는 地方, 州, 自治州, 自治官區, 地區, 市, 市區域, 邑區域 및 農村居住地에 있어서 國家權力機關은 해당 人民代議員 大會이다.

第146條 地方人民代議員大會는 全國家的 利益과 각각의 소비에트지역내에 거주하는 市民의 이익을 위하여 地方的 의의를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上級國家機關의 결정을 실행하며 下級人民代議員大會의 활동을 지도하고 共和國 또는 全聯邦의 의의가 있는 문제의 심의에 참여하며 그 의견을 제시한다. 地方人民代議員大會는 그 지역에서의 國家, 社會, 文化的 건설을 지도하고 經濟·社會의 발전계획과 地方豫算을 승인하고 그 組織하는 國家機關, 企業, 시설 및 組織을 지도하며, 法律의 준수, 國家社會의 질서유지 및 市民의 권리보호를 보장하고 國防력의 強化를 지원한다.

第147條 地方人民代議員大會는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종합적인 경제와 社會의 발

전을 보장한다. 지역내에 있는 上級機關에 소속하는 企業, 施設 및 組織에 의한法律의 준수를 감독하고 토지이용, 자연보호, 건설, 노동자원의 이용, 국민소비재의 생산, 주민의 社會·文化, 일상생활 기타 서비스분야에서의 활동을 조정하고 감독한다.

第148條 地方人民代議員大會는 蘇聯邦, 蘇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律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의 범위내에서 결정을 행한다. 地方人民代議員大會가 내린 결정은 人民代議員大會의 지역내에 있는 모든 企業, 시설, 組織 및 公職者와 市民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第149條 地方, 州, 自治州, 自治官區, 地區, 市 및 市地區內의 각 人民代議員大會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人民代議員大會議長의 지휘를 받고 있는 소비에트幹部會이며 市邑面人民代議員大會에 있어서는 그 人民代議員大會의 議長이다.

第150條 地方人民代議員大會의 執行·處理機關은 소비에트에 의하여 組織되는 執行委員會이다. 執行委員會는 그 構成員을 선출한 人民代議員大會에 대하여 노동집단의 집회 및 거주지별 市民集會에서 1年에 1回 以上 보고를 행한다. 地方人民代議員大會執行委員會는 그 構成員을 선출한 人民代議員大會 또는 上級의 執行·處理機關에 대하여 직접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第7編 裁判, 仲裁 및 檢察

第20章 法院과 仲裁機關

第151條 蘇聯邦에서의 裁判은 法院만이 행한다. 蘇聯邦에 蘇聯邦最高法院, 蘇聯邦構成共和國最高法院, 自治共和國最高法院, 地方, 州와 市의 法院, 自治州法院, 自治官區法院 및 地區(市)人民法院을 두고 軍法會議를 둔다.

第152條 蘇聯邦에서의 모든 法院은 法官과 人民陪審員에 의하여 選舉制의 원칙에 따라 조직된다. 다만, 軍法會議의 法官은 예외로 한다. 地區(市)人民法院의 人民法官, 地方과 州 및 市法院의 法官은 그 上級人民代議員大會에 의하여 선출된다. 蘇聯邦最高法院, 蘇聯邦構成共和國과 自治共和國의 最高法院, 自治州法院과 自治官區法院의 法官은 각각 蘇聯邦最高會議, 蘇聯邦構成共和國과 自治共和國의 最高會議, 自治州와 自治官區의 人民代議員大會에 의하여 선출된다. 地區(市)人民法院

의 人民陪審員은 주거지 또는 직장별 市民集會에서 公開投票에 의하여, 上級法院의 人民陪審員은 그 人民代議員大會에 의하여 선출된다. 軍法會議의 法官은 蘇聯邦大統領에 의하여 임명되고 그 人民陪審員은 軍人集會에서 公開投票에 의하여 선출된다. 모든 法院의 法官은 10년의 任期로 선출되고, 모든 法院의 人民陪審員은 5년의 任期로 선출된다. 法官과 人民陪審員은 그들을 선출한 機關 또는 選舉人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하여 보고의 의무를 가지며, 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환될 수 있다.

第153條 蘇聯邦最高法院은 蘇聯邦의 最高裁判機關이며 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蘇聯邦의 法院 및 蘇聯邦構成共和國에 대한 法院의 활동을 감독한다. 蘇聯邦最高法院은 院長, 副院長, 法官 및 人民陪審員으로 구성된다. 蘇聯邦最高法院의 구성에는 직무상 蘇聯邦構成共和國의 最高法院院長이 포함된다. 蘇聯邦最高法院의 組織과 활동절차는 蘇聯邦最高法院法으로 정한다.

第154條 모든 法院에서의 民事 및 刑事事件의 審理는 합의제에 의한다. 第1審法院에서는 人民陪審員의 參여하에 행하여진다. 人民陪審員은 裁判을 함께 있어서 法官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第155條 法官과 人民陪審員은 獨립이고 法律에 대하여만 구속된다. 法官과 人民陪審員에게는 그 權利의 行사와 義務의 이행에 대한 지장을 받지 아니하고 효과적으로 裁判을 하기 위한 조건이 보장된다. 裁判을 행함에 있어서 法官과 人民陪審員의 활동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간섭은 法에 의하여 문책을 받는다. 法官과 人民陪審員의 불가침 및 그 獨립에 대한 기타의 보장은 [蘇聯邦에서의 法官의 身分에 관한法律] 蘇聯邦과 蘇聯邦構成共和國의 法令으로 정한다.

第156條 蘇聯邦에서의 裁判은 法과 裁判에 대한 市民의 平等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第157條 모든 法院에서의 事件의 심리는 공개된다. 法院의 비공개 법정에서의 事件의 심리는 法이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되고 訴訟節次에 관한 모든 규칙을 준수하여 행한다.

第158條 피고인에 대하여는 辯護權이 보장된다.

第159條 訴訟節次는 蘇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 自治州 및 自治官區의 언어 또는 그 지역의 주민다수가 사용하는 언어로 행하여진다. 訴訟節次에 사용되는 언어를 알지 못하는 事件關係者를 위하여 事件의 자료를 충분히 알 권리, 통역에 의하

여 裁判活動에 참여하는 권리 및 法院에서 모국어로 전술하는 권리가 보장된다.

第160條 누구든지 法院의 判決 또는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有罪로 推定되거나 刑罰을 받지 아니한다.

第161條 辯護人團은 市民 및 組織에 法律上의 救助를 提共한다.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民에 대한 法律上의 救助는 無償으로 한다. 辯護人의 組織 및 활동질차는 蘇聯邦 및 蘇聯邦構成共和國의 法律로 정한다.

第162條 民事 및 刑事事件의 訴訟節次에는 社會組織 및 노동집단의 대표가 참가할 수 있다.

第163條 企業, 施設 및 組織間의 紛爭은 國家仲裁機關이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해결한다. 國家仲裁機關의 組織과 활동질차는 蘇聯邦의 國家仲裁法으로 정한다.

第21章 檢 察 廳

第164條 蘇聯邦檢察總長 및 그 所屬檢查는 各省, 國家委員會와 官廳, 企業, 施設과 組織, 地方人民代議員大會의 執行, 處理機關, 콜호즈, 협동조합 기타 社會組織, 公職者 및 市民에 의한 法律이 정확하고 일관성있는 執行에 대한 最高의 감독을 그 임무로 한다.

第165條 蘇聯邦檢察總長은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와 蘇聯邦最高會議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報告의 의무를 가진다.

第166條 蘇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 地方, 州 및 自治州의 檢查는 蘇聯邦檢察總長이 임명한다. 自治管區, 地區 및 市의 檢查는 蘇聯邦構成共和國의 檢查가 임명하고 蘇聯邦檢察總長의 승인을 받는다.

第167條 蘇聯邦檢察總長 및 모든 檢查의 任期는 5年으로 한다.

第168條 檢察廳의 여러 機關은 모든 地方機關으로부터 獨립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고 蘇聯邦檢察總長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檢察廳에 대한 여러 機關의 組織 및 업무질차는 [蘇聯邦檢察에 관한法律]로 정한다.

第8編 蘇聯邦의 國章, 國旗, 國歌 및 首都

第169條 소비에트社會主義聯邦共和國의 國章은 地球를 배경으로 하여 태양광선과

밀이삭으로 된 테두리안에 낫과 망치를 그려 넣고, 蘇聯邦構成共和國의 각국어로 '萬國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 하라'하고 표기한다. 國章의 상부에는 5각의 별이 있다.

第170條 소비에트社會主義聯邦共和國의 國旗는 깃대옆 위쪽 구석에 금색의 낫과 망치를 그려 넣고, 그 상부에 금색의 테를 두른 5각의 붉은 별이 그려진 赤色의 長方形의 천(포)이다. 國旗의 從과 橫의 比率은 1대 2이다.

第171條 소비에트社會主義聯邦共和國의 國歌는 蘇聯邦最高會議가 이를 승인한다.

第172條 소비에트社會主義聯邦共和國의 首都는 모스크바市로 한다.

第9編 蘇聯邦憲法의 效力과 그 개정절차

第173條 蘇聯邦憲法은 最高의 法的 効力を 가진다. 모든 法律 및 여러 國家機關의 기타 法令은 蘇聯邦憲法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공포된다.

第174條 蘇聯邦憲法의 改正은 蘇聯邦人民代議員 총수의 3分의 2以上의 찬성에 의하여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가 결정한다.

= 1991年 3月 現在 蘇聯邦最高會議에서 改正審議中인 條項 =

第113條 2. 蘇聯邦最高會議는 蘇聯邦大統領의 제안에 따라 閣僚會議를 構成·解散한다.

3. 蘇聯邦最高會議는 蘇聯邦大統領의 推薦에 따라 閣僚會議議長을 임명하고 閣僚 및 蘇聯邦國家安全委員會 委員의 任命을 承認한다.

21. 蘇聯邦最高會議는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 閉會中, 國民投票의 實施 與否를 결정한다.

第127條의 3 7. 蘇聯邦大統領은 蘇聯邦會議의 의견을 고려하여 蘇聯邦最高會議의 承認을 얻어 閣僚會議를 構成한다. 蘇聯邦大統領은 閣僚會議를 개편하고 蘇聯邦最高會議에 閣僚會議議長首候補를 추천하며 蘇聯邦最高會議의 承認을 얻어 閣僚會議議長 및 閣僚를 해임한다.

9. 憲法 또는 法律에 대한 違反行爲가 발생한 경우, 蘇聯邦大統領은 閣僚會議의 決定 및 閣僚와 그 下部機關의 활동을 정지시키고 蘇聯邦共和國政府의 決定을

중지시킬 수 있는 權限을 가진다.

10. 蘇聯邦大統領은 蘇聯邦國家安全委員會를 主管하고 聯邦會議의 意見과 蘇聯邦最高會議의 承認을 얻어 그 構成員을 임명한다. 蘇聯邦國家安全委員會는 蘇聯邦의 國防政策 및 國家·經濟·環境面에서의 安全, 災害對策 等 非常事態, 社會秩序의 維持를 담당한다.

第127條의4 蘇聯邦大統領은 蘇聯邦會議를 主管하며 蘇聯邦副統領 및 各共和國 最高指導者는 聯邦會議에 참석하여야 할 義務를 진다. 聯邦會議 決定은 構成員 3分의 2 以上의 賛成을 얻어 성립되며 蘇聯邦大統領令으로 이를 공포한다. 聯邦會議에서의 審議는 共和國代表로 構成되는 常任委員會에서 준비된다.

第127條의5 蘇聯邦副統領은 蘇聯邦大統領의 제안으로 임명되며 蘇聯邦大統領이 委任한 임무를 수행한다. 蘇聯邦大統領의 不在 또는 有故時에는 蘇聯邦大統領의 權限을 대행한다.

第127條의6 蘇聯邦大統領은 蘇聯邦의 法律, 蘇聯邦人民代議員大會와 蘇聯邦最高會議의 決定 및 蘇聯邦大統領令의 執行을 감시하는 國家最高監督局을 組織한다. 國家最高監督局의 長은 蘇聯邦副統領으로 하되, 그 構成 및 權限은 法律로 정한다.

第127條의10 蘇聯邦大統領의 職務修行이 불가능한 경우, 蘇聯邦大統領의 權限은 蘇聯邦副統領에 委任되며 그러한 委任이 불가능한 때에는 蘇聯邦最高會議議長에 委任된다.

第128條 閣僚會議는 蘇聯의 執行·管理機關이며 蘇聯邦大統領에 종속된다.

第129條 閣僚會議는 閣僚會議議長 閣僚會議副議長(複數), 閣僚, 蘇聯邦機關 指導者들로 構成되며 共和國首相은 閣僚會議에 참석하여야 할 義務를 진다.

第130條 閣僚會議는 蘇聯邦大統領과 蘇聯邦最高會議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蘇聯邦最高會議는 閣僚會議를 不信任할 수 있다.

第132條 閣僚會議는 蘇聯邦共和國과 공동으로 共通通貨에 의한 單一의 財政·金融·通貨政策의樹立, 蘇聯邦豫算의樹立과 執行, 綜合的 經濟政策, 연료·에너지, 國防產業, 宇宙開發, 情報·通信, 蘇聯邦의 外交政策과 對外經濟政策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다.

改正審議條項 :〈文俊朝譯〉

〈參考資料〉

· 日本每日新聞, 1990. 11. 4日字.

《研究基礎資料：翻譯》91-01(通卷 第12卷)

蘇聯의 憲法

(非賣品)

1991년 3월 25일 인쇄

1991년 3월 30일 발행

편집 및 발행
인 쇄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컴퓨터산업(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의 103
전화 : 722-0163~5
FAX : 722-2900

등록번호 1981. 8. 11 제1-190호

